

# 沿岸國의 介入權에 관한 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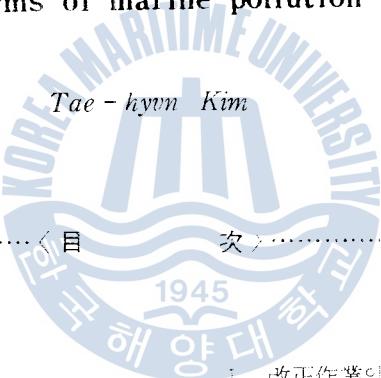
## — 海洋污染과 關聯하여 —

金 泰 賢

A Study on Intervention by a Coastal State.

— in terms of marine pollution —

Tae - hyun Kim



### 第1章 序論

- 1. 問題提起
- 2. 改正作業의 意見

### 2. 研究目的와 范圍

- 3. 國際海事機構의 研究報告書
- 4. 沿岸國 介入에 關한 新提案
- 5. Intervention 1969 와 改正

### 第2章 公海上의 污染에 대한 沿岸

#### 國의 介入權

- 6. 國際海事機構 法律委員會
- 7. 第 53 會期

### 1. 公海上의 海洋污染

### 2. 公海上의 介入와 關한 國際

#### 協約

- 6. 國際海事機構 法律委員會

### 第3章 海難救助協約와 沿岸國의 介

#### 入權

### 第4章 結論

### 參考文獻

## ABSTRACT

A Study on Intervention by a Coastal State

- In Terms of Marine Pollution -

Kim Tae Hyun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Korea Maritime University*

After 30 years of growing awareness - assisted by the Torrey Canyon, Amoco Cadiz, and other famous incidents - marine pollution is now a conspicuous part of our civilization and, states have regarded as important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a coastal state threatened with oil pollution damage make take control of the situation, even against the will of other interested states or persons (who may include the shipowner charterer, cargo owner, insurers, salvors, and the state of registry).

Discussion of the question has been complicated by related issues such as whether there is a right to intervene in international law, or whether there is merely an immunity

for what is an unlawful intervention ; whether these right (or immunities) extend to taking action inside the territorial sea of another state, or whether they merely extend to action taken on the high seas; and the extent to which the sovereignty of a state exists over its own territorial sea ; nowadays, the crucial question is whether the coastal state has the right to order the salvor to start the salvage operation,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negotiation between the shipowner and the salvor are still pending or have failed for the time being.

This thesis tackles some of the above problem.

In Chapter One, there is a brief introduction of this study.

Chapter Two and Three are mainly concentrated to intervention by a coastal states in terms of marine pollution.

(1) Chapter Two is devoted to 1) High sea and marine pollution 2) international convention as to the intervention in the high sea.

(2) Chapter Three is devoted to new approaches in government salvage, vessel traffic manage and compulsory reporting system as to marine accidents.

Consequently, many of the specific provisions on marine pollution in the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represent preventive and approaches to marine pollution control, therefore both all the nations and specially our country should take efforts to find ways of converting general marine pollution control provisions into more concrete, more significant legal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s at glob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 第 1 章 序 論

### 1. 問題提起

傳統國際法下에서는 海洋은 領海와 公海로 分割하여 前者에 있어서는 排他的 領域權이, 後者에 있어서는 公海自由의 原則이支配하고 있었기 때문에, 沿岸國은 公海上에서 海洋環境保護를 為한 實效的인 法的規制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Torrey Canyon*號 事故以后 公海上에서 外國船舶의 事故로 인하여 沿岸國이 현저한 油類污染의 被害를 입게되는 경우에, 非常措置로써 沿岸國은 介入權을 行使할 수 있는 지가 國際法上 問題視되었다.

또한 비록 領海上이라 할지라도 *Amoco Cadiz*號 事故에서 볼 수 있듯 바와 같이 現行의 海難救助契約이 遭難船舶의 所有者와 救助者에 의한 契約自由의 原則에 의하여 締結되기 때문에 沿岸國의 介入은 排除되었고, 그로 인하여 公共의 利益(public policy)을 侵害하는 결과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그러므로 現國際環境法의 次元에서 종래의 公海自由의 原則은 制限내지 修正이 不可避하며, 深海底制度 및 沿岸國의 海洋資源의 權利主張에 結付된 排他的 經濟水域 등 海洋區分의 再編成問題와 함께 海洋環境保護制度는 新海洋法 秩序의 基本的인 支柱의 하나로 되었다.

특히 沿岸國의 介入權은 海上企業活動의 媒介體인 船舶의 事故로부터 海洋被害을 고려하여 그範圍 내지 限界를 決定해야하는 동시에 海洋自由의 原則에 따른 船舶의 自由通航에 대하여 不必要한 干涉을 排除

해야 함은 물론이다.

더구나 오늘날 海運產業의 계속적인 發展에 따라 船腹量이 增加하고 있으며, 船舶自體도 高速化, 大型化 됨으로써 大量의 油類의 流出을 수반하는豫測할 수 없는 큰 海難事故의 發生可能性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

또한 便宜置籍國의 問題, 開發途上國의 老朽油槽船 구입 등은 海洋汚染의 發生可能性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狀況에도 불구하고 污染事故가 發生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公海上 介入에 關한 國際協約 (International Convention Relating to Intervention on the High seas in cases of Oil pollution Casualties, 1969. 以下 “Intervention 1969”라 한다) 및 1973年の 油類 以外의 物質에 의해 污染된 경우의 公海上 介入에 關한 議定書 (Protocol Relating to Intervention on the High Seas in cases of pollution by substances other than Oil, 1973. 以下 “Intervention PROT”라 한다)가 각각 發效하여 國際的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그 内容에 있어서는 많은 問題點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海難救助協約과 관련하여 볼 때도 각 국가들은 Amoco Cadiz號 事故 發生時 야기되었던 問題點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前者의 國際條約을 수락조차 하지 않고 있는 實情이다.

## 2. 研究의 目的과 範圍

### (1) 目的

이 論文의 目的是 첫째 Torrey Canyon號 事故以后 문제가 된 公

海上에서 海難등으로 인한 汚染事故가 發生한 경우에 이에 대한 沿岸國의 介入權과 關聯하여 國際條約上의 規定들을 比較, 分析하여 問題點을 提示하고, 그 대案을 提案하고자 한다.

둘째, 本章 私法的趣旨에 海難救助協約이 採擇되었다 힘자라도 大型污染事故는 公共福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러한 觀點에서 IMO의 第35-54會議의 計科中 沿岸國의 介入權과 關聯된 內容을 分析하고, 各國의 提案들을 살펴보자. 끝디.

세째, 上記의 目的을 基대로 해서 우리나라의 現況을 살펴보고 그 對策方案을 提示하고자 한다.

## (2) 範 圓

International海洋環境法의 主要研究對象中에서 沿岸國의 介入權과 關聯된 國際協約를 中心으로 考察하고자 한다.

第2章에서는 全海上의 汚染에 대한 沿岸國의 介入權을 考察하였다. 이는 위하여 條約論的方法을 採擇하였다. 즉 1958年協約, Intervention 1969, UN海洋法協約等을 時代順에 따라서 沿岸國의 介入權의 内容을 分析, 檢討하였다. 그 중에서 特히 協約의 内容이 抽象協約의 内容을 分析, 檢討하였다. 그 중에서 特히 協約의 内容이 抽象的인 경우, 介入權行使의 根據가 된다는 맥락에서, Intervention 1969의 成立背景, 協約上 介入權을行使할 수 있는 경우, 介入權의 介入節次, 介入措置의 限界에 대하여 살펴보고, 나아가서 이 協約의 問題點을 밝히고 對策을 提示한다.

이러한 沿岸國의 介入權行使와 관련한 基本的 bases를 바탕으로 하여 第3章에서는 Amoco Cadiz號 事故以后 契約自由의 原則과 公共의 利

益과의 衝突이라는 문제점이 發生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解決을 위하여 각국들과의 의견을 沿岸國의 介入權行使에 있어서 海難救助協約과 關聯한 權限行使方法, 그 範圍, 그리고 關聯된 문제등을 IMO의 資料를 통해 考察해 보았다.

끝으로 이 論文의 結論에서는 各章에 있어서의 內容을 정리하여 私見을 제시하였다.



海上에서 海難 등으로 인한 汚染事故가 發生한 경우에 이에 대한 沿岸國의 介入權과 關聯하여 國際條約上의 規定들을 比較, 分析하여 問題點을 提示하고, 且 代案을 提案하고자 한다.

首先, 비록 私法的趣旨에 海難救助協約이 採擇되었다 할지라도 大型污染事故는 公共福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러한 觀點에서 IMO의 第 35-54 項期의 資料中 沿岸國의 介入權과 關聯된 内容을 分析하고, 각 國의 提案들은 살펴보도록 한다.

次째, 上記의 目的을 基대로 해서 우리나라의 실정을 살펴보고 且 對策方案을 提示하고자 한다.

## (2) 範 圍

國際海洋環境法의 主要研究對象 申대기 沿岸國의 介入權과 關聯된 國際協約을 中心으로 考察하고자 한다.

第 2 章에서는 全海上의 汚染에 대한 沿岸國의 介入權을 考察하였다. 이를 위하여 條約論的方法을 採擇하였다. 首 1958 年 協約, Intervention 1969, UN 海洋法協約等을 時代順에 따라서 沿岸國의 介入權協約의 内容을 分析, 檢討하였다. 그 중에서 特히 協約의 内容이 抽象的인지는 하자면 介入權行使의 根據가 된다는 맹각에서, Intervention 1969의 成立背景, 協約上 介入權을 行使할 수 있는 경우, 介入權의 根據, 介入節次, 介入措置의 限界에 대하여 살펴보고, 나아가서 이 協約의 問題點을 밝히고 對策을 提示한다.

이러한 沿岸國의 介入權行使와 관련한 基本的 基礎를 바탕으로 하여 第 3 章에서는 Amoco Cadiz 號 事故以后 契約自由의 原則과 公共의 利

益과의 衝突이라는 문제점이 發生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解決을 위하여 각국들과의 의견을 沿岸國의 介入權行使에 있어서 海難救助協約과 關聯한 權限行使方法, 그 範圍, 그리고 關聯된 문제등을 IMO의 資料를 통해 考察해 보았다.

끝으로 이 論文의 結論에서는 各章에 있어서의 內容을 정리하여 私見을 제시하였다.



## 第2章 公海上의 汚染에 대한 沿岸國의 介入權

### 1. 公海와 海洋污染

#### (1) 公海의 定義

公海는 沿岸國의 内水에 領海 및 管轄權이 미치는 바다의 外側에 位置한 大洋의 部分을 말한다.<sup>1)</sup> 따라서 公海는 領海와 接續水域를 排他的 經濟水域을 除外한 部分과 200 海里의 限界以遠에 위치한 大陸棚의 上部水域과 深海底의 上部水域을 意味한다.

1982年 UN海洋法協約에서도 公海의 範圍를 “一國의 排他的 經濟水域, 領海, 内水 또는 群島國家의 群島水域에 包含되지 않는 海洋의 모든 部分이다.”고 規定하고 있다.<sup>2)</sup>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海難의 結果 發生하는 大型海洋污染事件의 發生場所가 대개 沿岸國으로부터 50 mile 以內이고, 이 경우에 특히沿岸國에게 막대한 損失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海難의 防止라는 點에서 領海以遠海域이라고 定義한다.

#### (2) 公海上의 海洋污染

内水와 領海는 國家領域의 一部이기 때문에 그 範圍內에서의 汚染에 대하여는 沿岸國이 排他的 管轄權을 가짐은 當然하다. 英國은 일찍이 1922年 Oil in Navigable Waters Act를 制定하여 이에 對處한

---

註) 1) V. von Glahn, Law among Nations : An Introduction to Republic International Law 3rd ed. Macmillan, New York (1976). p.322.



바 있고 美國은 1924 年 Oil Pollution Act 를 制定함으로써 이에 따르고 있다.<sup>3)</sup> 그러나 公海에서의 汚染은 沿岸國의 管轄이 미치지 않는 海域에서의 汚染이므로 國際法이 適用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公海라는 水域에서는 國際法上 이른바 「公海自由」(freedom of high seas) 的 原則이 認定되는 것이다.

이 「公海自由」의 原則은 公海는 모든 國民에 開放되는 것이며 모든 國家가 他國에 대하여 不當한 損害를 끼치지 않는 限 自由로이



## 第2章 公海上의 汚染에 대한 沿岸國의 介入權

### 1. 公海와 海洋污染

#### (1) 公海의 定義

公海란 沿岸國의 內水에 領海 및 管轄權이 미치는 바다의 外側에 位置한 大洋의 部分을 説한다.<sup>1)</sup> 따라서 公海는 領海와 接續水域 但排他的 經濟水域을 除外한 部分과 200 海里의 限界以遠에 위치한 大陸棚의 上部水域과 深海底의 上部水域을 意味한다.

1982 年 UN 海洋法協約에서도 公海의 範圍를 “一國의 排他的 經濟水域, 領海, 內水 또는 群島國家의 群島水域에 包含되지 않는 海洋의 모든 部分이다.”고 規定하고 있다.<sup>2)</sup>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海難의 結果 發生하는 大型海洋污染事件의 發生 場所가 대개 沿岸國으로부터 50 mile 以內이고, 이 경우에 특히 沿岸國에게 막대한 損失을 가졌다 주기 때문에 海難의 防止라는 點에서 領海以遠海域이라고 定義한다.

#### (2) 公海上의 海洋污染

內水와 領海는 國家領域의 一部이기 때문에 그 範圍內에서의 汚染에 대하여는 沿岸國이 排他的 管轄權을 가짐은 當然하다. 英國은 일찍이 1922 年 Oil in Navigable Waters Act 를 制定하여 이에 對處하기

---

註) 1) V. von Glahn, Law among Nations : An Introduction to Republic International Law 3rd ed. Macmillan, New York (1976). p.322.

2) 1982 年 UN 海洋法協約 第 86 條

바 있고 美國은 1924 年 Oil Pollution Act 를 制定함으로써 이에 따르고 있다.<sup>3)</sup> 그러나 公海에서의 汚染은 沿岸國의 管轄이 미치지 않는 海域에서의 汚染이므로 國際法이 適用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公海라는 水域에서는 國際法上 이른바 「公海自由」(freedom of high seas) 的 原則이 認定되는 것이다.

이 「公海自由」의 原則은 公海는 모든 國民에 開放되는 것이며 모든 國家가 他國에 대하여 不當한 損害를 끼치지 않는 限 自由로이 使用될 수 있는 自由로 意味한다.<sup>4)</sup> 그것은 어떤 國家도 公海의 어떤 部分을 그 主權下에 두는 것은 有效하게 主張할 수 없다는 “歸屬으로부터의 自由”를 內容으로 한다.<sup>5)</sup>

그런데 汚染行爲가 公海上에서 發生한 경우, 傳統的인 「公海自由의 原則」에 의하면 公海上에서 他國의 船舶에 대하여 權力行爲를 할 수 없으며 오직 旗國主義 方式으로 公海上 海洋污染에 대해 規制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날로 大型化되고 深刻化되는 海洋污染을 效果的으로 規制하기 為해서는 傳統的인 「旗國主義」만으로는 不充分하다는 것이 널리 認識되어 傳統的인 旗國主義가 과연 海洋環境의 保全을 為해 公海上에서의 올바른 解決方法이라고 볼 수 있는가가 問

註 3) 金燦奎, 海洋污染과 國際條約, 國際法學會論叢, 第 23 卷, 1.2 合併號  
(1978.12) pp.97-98.

4) 1982 UN 海洋法協約 第 87 條 12 項

5) 1982 UN 海洋法協約 第 88 條

題된다.<sup>6)</sup>

이의 問題點을 살펴보면,

첫째로 自國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水域에서의 汚染行爲에 關해 旗國은 그 汚染의 直接的인 被害國은 아니기 때문에 旗國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규제조치는 기대하기 힘든다. 특히 오늘날 海運界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便宜置籍」과 關聯해서 더욱 甚 問題로 남는다. 왜냐하면 便宜置籍國의 汚染行爲에 대한 充分한 規制를 한다는 것은 無理이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旗國이 條約에 依據한 國內措置를 전혀 取하지 아니한 경우 效果的인 汚染防止를 為한 規制를 確保할 수가 없게 된다는 點이다.

오늘날 海洋汚染의 주된 原因이 海洋活動에 隨伴된 油類에 의한 汚染이라고 볼 수 있고, 油類는 海面에서 빨리擴散되어 薄은 膜을 만들고 潮流의 風向에 따라 선연豫測할 수 있는 方向으로擴大되며 특히 公海에서 發生한 汚染事故는 가까운 沿岸國에로의 被害가 擴大될 수 있기에 어느 國家의 管轄에도 屬하지 않는 公海上의 汚染規制에 대한 國際的인 조치가 必要하다.

오늘날 國際條約上으로 公海에서 發生하는 海洋汚染을 規制하는 것으  
로는 1958年 海洋法協約과 組合せ으로 沿岸國이 公海上에서 介入을

註) 6) 崔載勳; 海洋汚染防止에 關한 旗國主義의 修正, 國際法學會論叢,  
第23卷, 1.2號 合聯號, 1978. pp.287-289.

行使할 수 있도록 規定된 Intervention. 1969., 汚染物質의 범위를 기  
름 以外의 유해한 物質에까지 擴大한 intervention PROT, 그리고  
UN 海洋法協約 등이 있다.

이러한 國際條約上의 沿岸國의 介入權 行使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海洋污染의 문제는 몇가지 面에서 地球的 問題이며, 世界 모든  
部分의 海洋의 性質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海洋先進國이나 開發途上國  
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에 영향을 준다는 點과 또한 모든 국가가 海  
洋污染問題의 어느 面에서나 영향을 받는다는 點<sup>7)</sup>에서 볼 때, 世界的  
의 次元의 協力으로 公海上의 汚染防止가 絶對的으로 必要하다고 하겠  
다.

## 2. 公海上의 介入에 關한 國際協約

### (1) 1958年 協約<sup>8)</sup>

海洋의 油類污染을 規制하기 為한 國際條約이 現實的으로 採擇되

註 7) Oscar Schachter and Daniel Serwer, "Marine Pollution Problems and Remedies" 65 American of International Law(1971). p.84.

8) 1958年 協約은 다음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 ①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Territorial Sea and the Contiguous Zone, 1958)
- ② 1958년 공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f the High Seas, 1958)
- ③ 1958년 공해상 어업 및 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Fishing and Conservation of the Living Resources of the High Seas, 1958)
- ④ 1958년 대륙붕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Continental Shelf, 1958)

이 뒤 것은 1954 年의 일이다.<sup>9)</sup> 汚染의 주된 原因이 油類에 의한 것 이므로 公海上에서의 油類汚染을 방지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국제조 약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Intervention 1969가 成立되자 이김에 公海上에서의 油類汚染이 發生하였을 경우 介入權의 正當性을 부여한 것 이었다. 그것은 1958 年의 領海와 接續水域에 關한 海洋法協約이라고 하겠다.

1958 海洋法協約에서 주목하는 바와 같이 領海以遠의 海域은 高海로 定義한다면 汚染事故가 發生하였을 때 沿岸國은 領海以遠 接續水域內의 海域에 대하여 必要한 措置를 취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同協約 第24條에서 沿岸國은 領海以遠의 海域일자라도 領海測定基線에서 12海里까지의 海域을 接續水域에 있어서는 關稅, 財政, 出入國管理, 卫生等 관할 法令을 制定, 실시할 수 있다는 規定되어 있으므로 領海以遠 接續水域내의 海域에서 沿岸國은 同協約 第24條에 規定된 卫生等 관할 法令을 制定, 실시할 수 있다는 規定으로 보아 아래와 海域에 發生한 汚染에 대하여 沿岸國은 規制權, 權利를 行집하고<sup>10)</sup> 해야 되

#### 註 9) 어업규제와 관련하여

The 1882 Convention for the Regulation of police of the Fish in the North sea Outside the Territorial Waters는 1882년의 公海上 介入權의 制定과 是非 학자도 있다. Willian Kenneth Bissell, Intervention on the High Seas, Vol.7, No.4 July 1976, p.723

- 10) Yoram Dinstein, "Oil pollution by ships and Freedom of the High Seas",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January 1972), Vol.3, No.2, p.367. Contrariwise, F.D.Brown "The Lessons of the Torrey Canyon", 21 current Legal Problems (1968), p.130.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接續水域以遠의 公海上에서 發生한 汚染에 대하여 領海以遠 接續水域內의 海域에서와 같이 沿岸國이 規制를 할 수 있 는가에 대하여 論難이 있으나 接續水域以遠의 公海上의 汚染行爲에 대해서까지 沿岸國이 規制權을 行使할 수 없기 때문에 이 海域에서 一般的인 汚染防止의 管轄權은 行使할 수 없다고 解釋된다.<sup>11)</sup>

따라서 公海上에서의 汚染規制를 為한 沿岸國의 介入餘地는 接續水域 制度를 授用하여서는 不可能 하였으며 菲연적으로 다른 方法이 모색되어야만 하였다.

또한 1958 年 協約의 衛生에 關한 法令 (sanitary regulation) 에 油類污染을 包含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疑問이 있으며, 油類污染은 衛生에 關한 法令에 包含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學者가 있다.<sup>12)</sup> 그럴 경우 領海以遠과 겹치는 接續水域範圍內에서도 즉 領海以遠에서는 沿岸國은 油類污染防止를 為한 介入權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 (2) Intervention 1969.

### (가) 成立背景

1967 年 3 月, 11 萬 7,000 톤의 原油를 싣고 쿠웨이트를 떠나 Milford Haven, Wales로 航海中이던 Torrey Canyon 號가 英佛海峽의 公海上의 Seven Stones 暗礁에서 坐礁되어 大量의 原油를 流出함으로

---

註 11) 金燦奎, 前揭論文 (1978.12) p.101.

12) D.W. Abecassis, Oil pollution from ships. p.85.

씨 深刻한 汚染問題를 起起시켰다.<sup>13)</sup> 이 污染은 擴散되어 英國과 並 沿岸에 까지 미침으로써 難심한 被害를 주었다. 이 事故로 海洋污  
染의 國際性이 크게 浮刻되었으며 公海에서 外國船舶의 事故에 의하여  
自國沿岸이 현저한 油類污染의 被害를 입게 되는 경우에 污染防止를  
爲す 非常措置는 介入權을 行使할 수 있는가가 國際法上 問題되었다.

당시 英國政府는 坐礁한 Torrey Canyon 號와 海上에 滾動油類를 發  
理하기 為하여 航空油와 대비파합탄과 高性能 車彈子를 使用하여 爆炸  
시으로써 船을 소진기로 決定하고 3月 31日까지 바다에 허영으나 事  
情은 여의치 않았다.<sup>14)</sup>

이 사태가 문제로 된 것은 英國政府의 爆擊은 배우 與管轄 行爲인가  
이 理論的이든 國際法의 公海自由의 原則에 反하는가에 아니나는 一點  
이다. Torrey Canyon 號는 事故當時 公海上에 있었고 外國國旗를 들고  
있었지만 旗國의 排他的 管轄權에 關する 措置를 取해적아 做은 異의  
다.<sup>15)</sup> 英國政府는 自衛權의 法理에 의하여 沿岸國을 侵入한 措置를

註 13) H.Marcus Price Ⅲ, "Interrelationship of the Behavioral Sciences and Law in International Crisis Decision Making: An Analysis of "The Torrey Canyon Incident" As a Model," *The International Lawyer* (April 1974), Vol.8, No.2, pp.221~225.

14) 金燦奎, 前揭論文, (1978.12), p.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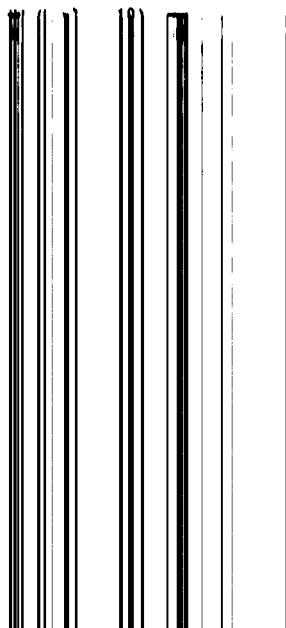
15) Torrey Canyon 號의 船籍은 Liberia이며, 所有主는 Bermuda의 Barracuda Tanker Corporation이고, 美國 Union Oil Company of California社가 裸傭船하였고, 승무원은 이태리인이 36名이었으며, 英國의 British Petroleum (BP)이 재항해용선한 선박이다.

取할 수 있다는 견해였으나 반드시 明確한 것은 아니었다.<sup>16)</sup>

從來의 傳統的인 公海自由의 原則에 의하면 公海上에서 船舶에 대한 管轄權은 原則的으로 그 船舶이 所屬하는 旗國에 있으며 그 밖의 어떤 國家도 公海上에서 他國의 船舶에 대해서 權力行爲를 할 수 없는 것은 當然한 것으로 생각되어져 왔다. 그래서 英國政府의 行爲에 論義가 있었으며 國際法上 公海上에서의 介入의 문제が IMO에 提起되었다.

1967年 5月 4日 IMO의 理事會는 特別會議를 召集했으며 理社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할 것을 指示했다. 즉 “領海밖에서 發生한 事故에 의하여 直接的으로 威脅을 받거나 影響을 받는 國家가 그 國家의 海岸線, 港口, 領海 혹은 觀光資原을 保護하기 為하여 어떤 措置를 取함으로써 船主, 海難救助會社, 保險會社, 旗國政府의 利害關係에 影響을 미칠지라도 그 措置를 取할 수 있거나 그 措置를 取해야만 하는 程度”<sup>17)</sup>에 관한 것이었다.

이 문제에 대하여 法律委員會는 海岸에서 떨어진 公海上에서 發生한 汚染事故에 대한 沿岸國의 權限을 規定하기 為한 國際會議의 召集을



이 深刻한 汚染問題를 惹起시켰다.<sup>13)</sup> 이 污染은 擴散되어 英國과 美  
國沿岸에까지 미침으로써 難以制伏한 被害를 주었다. 이 事故로 海洋污  
染의 國際性이 強제 浮刻되었으며 公海에서 外國船舶의 事故에 의하여  
自國沿岸이 難以制伏한 油類污染의 被害를 입게 되는 경우에 污染防止對  
策의 非常措置인 介入權을 行使할 수 있는가가 國際法上 問題되었다.

당시 英國政府이 坐擁する *Torrey Canyon*號의 海上의 撞擊油類의 漏  
洩事件 為由於 航空油와 대기화합물 등 高性能 暴彈이 亂用하여 爆炸  
발生로써 물을 噴진가로 決定하고 3月 31日까지 바다에 침몰하나 事  
情은 이와ち 않았다.<sup>14)</sup>

이미에이 時에가 된 것은 英國政府의 爆擊이 배우는 理由가 行爲의  
理論的底に 國際法의 公海自由의 原則에 反하는 바이 아니라는一點  
이다. *Torrey Canyon*號는 事故當時 公海上에 있었고 外國國籍이었으나  
英國의 排他的 管轄權에 由る 措置가 取해져야 했다. 但이 事  
件은 <sup>15)</sup> 英國政府는 自衛權의 法理의 由하에 沿岸國은 侵襲權을 措置한

註13) H.Marcus Price Ⅲ, "Interrelationship of the Behavioral Sciences and Law in International Crisis Decision Making, An Analysis of "The Torrey Canyon Incident" As a Model", *The International Lawyer* (April 1974), Vol.8, No.2, pp.221~225.

14) 金燦奎, 前揭論文, (1978.12).p.97.

15) *Torrey Canyon*號의 船籍은 Liberia이며, 所有主는 Bermuda의 Barracuda Tanker Corporation이고, 美國 Union Oil Company of California社가 裸傭船하였고, 승무원은 英대리인이 36名이었으며, 英國의 British Petroleum (BP)이 재항해용선한 선박이다.

取할 수 있다는 견해였으나 반드시 明確한 것은 아니었다.<sup>16)</sup>

從來의 傳統的인 公海自由의 原則에 의하면 公海上에서 船舶에 대한 管轄權은 原則的으로 그 船舶이 所屬하는 旗國에 있으며 그 밖의 어떤 國家도 公海上에서 他國의 船舶에 대해서 權力行爲를 할 수 없는 것은 當然한 것으로 생각되어져 왔다. 그래서 英國政府의 行爲에 論義가 있었으며 國際法上 公海上에서의 介入의 문제が IMO에 提起되었다.

1967年 5月 4日 IMO의 理事會는 特別會議를 召集했으며 理社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할 것을 指示했다. 즉 “領海밖에서 發生한 事故에 의하여 直接的으로 威脅을 받거나 影響을 받는 國家가 그 國家의 海岸線, 港口, 領海 혹은 觀光資原을 保護하기 為하여 어떤 措置를 取함으로써 船主, 海難救助會社, 保險會社, 旗國政府의 利害關係에 影響을 미칠지라도 그 措置를 取할 수 있거나 그 措置를 取해야만 하는 程度”<sup>17)</sup>에 관한 것이었다.

이 문제에 대하여 法律委員會는 海岸에서 떨어진 公海上에서 發生한 汚染事故에 대한 沿岸國의 權限을 規定하기 為한 國際會議의 召集을 勸告하고<sup>18)</sup> 國際協約의 草案을 作成하였다.

IMO 總會는 1967年 11月 브뤼셀에서 國際會議를 召集하자는 法

註 16) 閔星奎, 海洋污染에 관한 國際協約, 한국해양대학 해사도서출판부.

1975. p.11.

17) IMO. Document C/ES, III/5. Para.15.

18) IMO. Document LEG II/4, Dec.11.1967.

律委員會의 提議에 同意하고 이 會議는 “油濁事故에 있어서 公海上의 介入權에 관한 國際協約( Intervention 1969)”을 採擇하였다. 이 協約의 各 規定은 法律委員會가 作成한 草案과 大同小異하다.

#### (나) 協約上 介入權을 行使할 수 있는 경우

Intervention 1969 第 1 條 第 1 項은 締約國이 介入權을 行使할 수 있는 경우를 規定하고 있다. 同條項에 따르면 締約國은 「萬  
物無害」의 善果를 招來하려라는 為의合理的으로豫測되는 海難  
是害 이에 關聯된 行爲에 隨伴하는 기름에 의한 汚染 또는 그의 危  
險으로부터 생기는 自國沿岸 または 關係利益에 대한 重大하고도 急迫性  
危險을 防止, 較減 또는 除去하기 為하여 必要한 措置를 公海上의 外  
國船舶에 대하여 行使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規定의 가장 중요  
한 點이라면 重大하고도 急迫한 危險이 없다면 介入權을 認定되자 않  
는다는 것이다.

第 2 條 第 2 項에서는 軍艦 또는 國家가 所有하거나 運航하는 그 船  
隻 船舶으로서 政府의 非商業的인 써어버스에만 使用되는 것에 대하여  
는 介入權을 行使하자 못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 協約의 適用上 海難이라 함은 船舶의 衝突, 坐礁 그 밖의 航海  
上 事故 또는 船舶內 혹은 船舶外 그 밖의 事故를 意味하며 (第 3  
條 1 項), 海難에 關聯되는 坐礁船舶의 離礁作業과 海難救助行爲도 가리  
킨다고 본다.<sup>19)</sup>

註 19) 閔星奎, 前揭書, p.11.

充分히 있으며 善意의 謙用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介入權의 범위도 중요한 問題이며 그것은 船主 그리고 保險業者들과 중요한 聯關性이 있으며 또한 確實性이 重大關心事가 된다.

一般的으로 公海上에서 介入權을 行使하나, 그것은 航行自由의 原則에 대한 妨害로 推定되며, 從來 傳統國際法上의 自衛權을 說明함에 있어서 大部分의 學者들은 國內法上의 自衛權을 概念을 그대로 도입하여 「正當防衛」(狹義의 自衛權, 本來의 自衛權)와 「緊急避難」으로 나누어 說明하면서 前者は 不法한 侵害임을 要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여 구별하고 있다. 傳統國際法下에서 自衛라는 이름으로 그 緊急行爲가 正當化 된 것으로 認定된 代表的인 경우는 *Caroline號* 事件 뿐이다. 그 외의 事件들에 있어서는 그 正當性에 대한 논란이 많으므로, 實定國際法의 確立된 先例라고는 볼 수 없다. 다음에서 沿岸國의 介入權의 근거에 대한 학설을 살펴보면,

#### a) 自衛權說 (self-defence; 正當防衛說)

自衛權은 不法 및 自衛權을 行使하는 國家에 있어서는 法的義務에 대한 違反을 本質的인 要素로 한다. 法的義務는 國家의 主權을 侵害하는 것과 같은 實際的인 權利侵害를 意味하며 이러한義務의 違反에 대해 自衛의 權利가 부여된다고 한다. 또한義務의 違反은 緊急避難과 自衛權을 구별케 하는 不法行爲의 前提條件이라고 본다.<sup>21)</sup>

註 21) D.W. Bowett, *Self Defence in International Law* (Manchester UP, 1958). 9.

一般的으로 傳統國際法下에서 自衛라는 이름으로 그 緊急行爲가 正當化된 것으로 代表的인 경우는 1837年 Caroline號 事件으로 그 외의 事件들에 있어서는 그 正當性에 관해 論難이 많아서 實定國際法 속에서 確立된 先例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겠다.<sup>22)</sup> 當時 美國務長官 Daniel Webster는 自衛行爲가 正當化되는 경우는 오직 自衛의 必要性 急迫해 있고 압도적인 것으로, 다른 手段을 選擇할 餘地도 없고, 熟考한 餘裕 없는 (instant, overwhelming, and leaving no choice of means and no moment for deliberation) 경우에 限한다고 말하였다. 이 定義는 第 2 次大戰 후의 뉴론베르크 裁判의 判決에서도 認定되었으며, 自衛要件의 公式으로서 一般的으로 認定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23)</sup>

公海上에서 汚染事故 發生時 그에 대한 沿岸國의 介入權을 認定함에 있어서 自衛權說에 立脚하여 學說을 檢討할 때 船主는 沿岸國에 近接한 海洋에서의 汚染防止를 為하여 合理的인 措置를 取할 法的義務가 沿岸國에 대하여 부과되어 있는지가 問題이며 船籍國은 더욱 그려 하며 또한 沿岸國에 發生한 損害가 自衛權을 正當화하기 為하여 實質的인 權利의 侵害를 構成하느냐가 問題이다.<sup>24)</sup> 또한 一般的으로 汚染事故는 人爲의이 아닌 偶發的이라는 點과 무력공격에서만 自衛權이 正當化될 수 있고, 汚染事故의 경우는 介入權을 自衛權으로 正當化 시킬 수 없

註 22) 崔載勳, 國際法, p.131; Jennings, The Caroline and Mcleod Cases, 32 AM. J. INT'L L. 82.94 (1938).

23) 上揭書, p.132.

24) D.W.Abecassis. Op.cit., p.86.

다고 본다.<sup>25)</sup>

國際聯合憲章 第51條는 自衛權의 發動에 대하여 「武力攻擊」發生의 경우에 限定하고 있어서 公海上의 汚染事故로 인한 沿岸國의 介入權의 法的根據로서는 不適合하며 1954年의 London 協約은 投棄禁止違反을 不法의 行爲로 看做하더라도 旗國의 排他的管轄權을 認定하는 點에서 公海上의 介入權의 說明은 不適合하다.<sup>26)</sup>

#### b) 緊急避難說 (necessity)

緊急의 程度를 沿岸國의 利益을 船籍國의 利益과 比較하여 評價할 때 이 說이 公海上에서 汚染事故가 發生하였을 경우 介入權을 正當化할 수 있다는 데에는相當한 根據가 있다고 본다.<sup>27)</sup>

國際法上의 分野에서도 國內法上의 緊急避難과 같은 것이 制度化되어 있다. 例컨데 兩國을 흐르는 上流의 水位가 높아져서 그 때문에 上流의 國家가 洪水의 危險에 부닥쳐 下流의 國家편에 있는 水門을 開放할 必要가 있을 때, 下流의 國家의 許可를 얻을 時間의 餘裕가 없거나 혹은 許可를 求해도 얻지 못했을 때에는, 下流의 國家의 領域內에 들어가서 自手로 水門을 연다고 하는 것은 緊急避難으로서 許容되어야

---

註 25) L.C. Calfisch, "International Law and Ocean Pollution,

(1972). Revue Belgique de Droit International .7. at 20.

26) E.D. Brown. The Lesson of the Torrey Canyon (1969).  
p.126.

27) D. W. Abecassis. Op.cit. p.86.

한국어판은 隣接國이 大軍을 國境近處에 集結하여 바야흐로 攻擊을開始하고 있는 때라든가 또는 攻擊의 의도를 갖고 外國船隊가 自國을 노리고 가까이 오고 있을 때에도 다른 적당한 方法을 取함 餘裕가 없을 경우에는 強力行爲를 發動하는 것이 許容되어야 한 것이라고 한다.<sup>28)</sup> 만약 우리나라 緊急避難說이 介入權을 認定한다면 危險이 急迫한 狀態이며 沿岸國의 權利나 利益이 威脅받으면 威脅本身 權利의 重要性에 비하여 力量있는 擄置等 取함 中에는 防止行爲에 대해서는 정當性을 認定된다고 볼다.

一般的으로 緊急避難에 대하려는 그 效果로서 損害賠償을 要한다. 說明할이 보통이다. Intervention 1969의 賠償構造는 被害國에 대하여 被害에 대한 報償이라기 보다는 介入權의 濫用을 防止하는 것으로 把握된다. 물론 緊急避難說의 損害賠償라는 性質이 약간은 异議를 냈을 것이다.

#### c) 自己保護說 (self-protection)<sup>29)</sup>

이 說은 The 12 th Commission of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의 1969년 海洋污染에 관한 報告書에서 環境保全

註 28) 崔載勳, 前揭書, pp.131-132.

29) 1976년 캐나다 북부 수역오염방지법의 제정목적은 캐나다 자체의 特別한 이익을 위하여가 아니라 전 세계 환경증상에 대한 방지에 그치지 않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자기보호설적인 입장이라고 사비된다. Gotlich & Dalfen National Jurisdiction &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New Canadian Approaches to International Law, 67 AM.J. INT'L L. 229, 246 (1973).

을 爲한 法的根據로서 처음으로 提起되었다.<sup>30)</sup>

이 說은 다른 學說에 비하여 가장 받아들이기 쉬우나 막연하며 또 論爭의 餘地가 가장 많은 學說이며, 이는 “人民의 福祉는 最高의 善” (*Salus Populi Suprema Lex Esto*)이라는 法諺에 의거하여, 重大한 利益에 영향을 미치는 危險에 직면한 國家에 의해 取해지는 措置를 正當化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說은 그것이 적용되는 범위내에서 法秩序의 存在를 위협하는 結果가 되므로 法的概念으로서는 認定되지 않았고 다만 心理學的 用語로서 自己保存의 本能의 限度에 制限되었다. 國際法委員會는 自己保護說을 補充하여 一定한 범위내에서 汚染事故에 限하여 介入權의 行使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d) 沿岸國 介入根據의 檢討

上記 學說들은 概念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介入에 대한 沿岸國의 權限의 合法的 擴張이라는 점에서 共通性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根據를 個別的으로 적용시키기에는 實際上 어려움이 隨伴되므로 여러가지 根據를 綜合한 概念인 自己保護說이 妥當하다고 생각된다.

##### (라) 沿岸國의 介入節次

沿岸國은 필요조치를 取할 경우에는 海難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다른 나라 특히 旗國과 事前에 協議하여야 하며 (3條 a), 그

---

註 30) Claude. C. Emannelli, the Right of Intervention of Coastal states on the High Seas In case of Pollution Casualties. p.90.

措置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合理的으로豫想되는利害關係者에게 서제없이當該措置를通知하여 이들이提出한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3條b), 3條c項에서는關係國間의紛爭을防止할 필요에서沿岸國이措置를取하기前에 IMO가選定한 독립전문가와協議할 수 있는길을 열어놓고 있으며, 특히로緊急한 경우에는事前의通告 또는協議없이 또는아마開始한協議를계속하지 아니하고事態의緊急性에비추어 필요로하는조치를取할수 있도록하고있다.(3條d).

#### (마) 沿岸國의 介入措置의 限界

**Intervention 1969** 第5條는沿岸國이取하는措置의 程度에 대하여規定하고 있다. 5條1項에서는協約上의 介入權에 의거하여取하는措置를無制限한 것이아니고 實際로 입은損害 또는 입을우려가 있는損害와均衡을잃어서 45일된다는均衡의原則이시행하고 있다.

介入措置가损害와均衡을 이루고 있는가의 여부를檢討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事項은 ①措置를取하지 아니할 경우 당장 생겨날损害의 程度 및 可能性 ②措置의 有效性 ③措置에 의하여惹起될损害의 程度(3條3項)이다. 5條2項에서는合理的으로 필요로 하는限度를넘어가는아니되며 그目的을達成한 경우에는 즉시로 끝나야 하며措置는旗國, 第3國 또는關係人の權利 및 利益을 필요 이상으로侵害해서는 안되며 규정한沿岸國이協約의規定에 위반하는措置를취하여 남에게损害를惹起한 경우에는合理的으로必要로 하는

限度를 넘은 措置에 의하여 생긴 損害에 대하여 補償하여야 한다고規定하고 있다.( 6 條 ) 6 條는 沿岸國이 取한 조치가 協約의 위반으로 된 경우 賠償을 為한 중요한 規定으로, 이 條項은 國際慣習法上 緊急避難에 나타난 것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으며 緊急避難說에 비추어 協約에 包含하는 것은 當然한 일이라고 하겠다.<sup>31)</sup>

#### (바) Intervention 1969의 問題點

- ① 事前防止對策이 없고 事後對策的이다.

海上污染을 防止하기 為한 最善의 對策은 첫째, 汚染物質의 海上投棄를 禁止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이미 投棄된 污染物質을 除去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協約은 이미 發生한 海上污染事故에 대해서 介入할 海上污染事故에 대해서 介入할 수 있는 規定 즉 投棄된 污染物質에 대한 沿岸國의 介入權에 관한 規定만 指示하는 一種의 事後對策的인 缺陷이 있다.<sup>45)</sup>

海上污染事故는 성질상 일단 發生하게 되면 많은 國家의 利益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海洋을 元來의 狀態로 復歸시키는 데는 많은 時間과 努力이 필요하게 되므로 根本的인 海洋污染防止를 為해서는 事後對策보다 事前對策이 先行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協約은 海洋污染防止를 為하고 海洋 및 沿岸에 油類에 依한 污染의 危險을 초래하는 海難에의 重大한 結果에 對備하여 自國民의 利益을 保護할 必要性을 認識시킨다는 협약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污染事故의 예방조치에 대해

---

註 31) D.W. Abecassis, Op.cit. p.91.

서는 消極的이다.

## (2) 過剩介入의 우려

이 協約의 第 1 條 第 1 項에는 「이 協約의 締約國은 무역과  
제 有害한 結果를 招來하리란 것이 合理的으로豫測되는 海難 또는  
關聯된 行爲에 隨伴하는, 기름에 의한 海洋의 污染 또는 그 危險으로  
부터 自國의 沿岸 關係利益 (related interests)에 卑屈  
되거나 急迫한 (grave and imminent) 危險을 防止, 輕減 하거나 滅  
去하기 為하여 必要한 措置 (necessary measures)를 公海上에서 取  
할 수 있다」라고 規定하고 있고, 第 2 條에서는 第 1 條의 用語에 대해서  
서 法的義務를 規定하고 있으나 「有害한 結果」, 「合理的」, 「重大하  
도 急迫한 危險」, 「必要한 措置」等에 對한 適用에 대해서는 介入  
權을 行使할 沿岸國의 判斷基準에 막걸고 있다.

그러나 法的義務를 規定하고 있지 않은 用語를 解釋함에 있어 확  
연히 예측하고 具體的이 아니라 때문에 重大的 污染事故의 경우에  
는 諸端이 바뀐다면 그 意義가 대로 解釋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아랍국 관처의 公海上을 航海하는 이스라엘 船舶이 公海上에  
海洋汚染이 發生하였을 경우 그 污染事故가 一般的  
見解로서 충분히 利害當事國들과 協議하여 必要한 措置를 取할 수 있  
을에도 불구하고 兩國家의 民族的 感情으로 因하여 이스라엘 船舶을  
爆擊하여 沈沒시켰다고 假定하여 보자.

그러면, 이스라엘 政府는 아랍국의 措置를 過剩措置로 斷定 賠償請求  
는 물론 심한 경우에는 報復措置를 할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에 아랍국은 自國 判斷과 措置는 「必要한 措置」라고 主張하여 이 問題를 둘러싸고 戰爭까지 誘發시킬 可能性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問題를 事前에 防止하기 為하여 이 協約 第3條와 第5條를 두고 있으나 이는 오늘날과 같은 不信時代, 自國의 利益만을 擁護하려는 時代에 있어서는 많은 問題點을 남길 수 있다고 할 것이다.<sup>32)</sup>

더구나, 國家의 威信, 民族的 感情때문에 介入權이 모든 利害當事國에게 납득되도록 行使될 수 있는지가 疑心스럽다.

### ③ 技術的, 經濟的 問題

오늘날 船舶의 大型化 추세로 因한 海難事故의 大型化로 大量의 기름이 海洋으로 流出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流出된 기름을 除去하기 為해서는 많은 設備와 時間이 必要할 뿐만 아니라 能률적인 技術의 도입이 필요하다. 先進國에서는 9自國의 利益에 有害한 結果를 招來할 海洋污染에 대해서 필요한 措置를 取할 수 있는 合理的이고 效果的인 技術과 經濟的 能力이 充分하나, 後進國에 있어서는 技術的, 經濟的 能力의 不足으로 必要하고도 適切한 措置를 取할 수 없을 것이다.

海洋污染은 바람, 파도에 의하여 점차 擴大되어 결국 汚染物質을 除去하는 데는 더 많은 努力과 費用이 필요하게 되며, 더 나아가 더 많은 國家의 利益에 損害를 招來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協約은 經濟的, 技術的 能力이 不足한 國家에 있어서는 實行이 어

---

註 32) 金燦奎, 前揭論文(1978.12). p.105

려운 問題가 있다.

④ 遠距離에서 發生한 汚染事故에 대한 沿岸國의 介入

이 協約 第1條 第1項에서는 「締約國은 … 自國의 沿岸 또는 關係利益에 重大하고도 急迫한 危險을 防止, 輕減 또는 除去시키기 為하여 必要한 措置를 公海에서 取할 수 있다」라고 規定하고 있으므로 汚染事故가 沿岸 또는 關係利益에 有害한 結果를 招來하리란 것으로 判斷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汚染事故가 公海의 全般的 海洋環境을 해친다고 看做되더라도 沿岸國은 必要한 措置를 取하지 않을 것으로 推定된다.

即 各國은 自國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汚染事故에 대하여는 介入權을 行使하지 않을 것이므로 人類 共同의 財產인 海洋에 汚染을 放置하는 結果가 될 것이다. 따라서 沿岸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海上에서 發生한 기름污染事故에 대하여서도 介入하여야 할 必要性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 Intervention 1969에 나타난 問題點에 關한 對策

以上과 같은 海洋污染에 關한 史的인 考察과 Intervention 1969의 內容의 分析과 그 法的 根據를 檢討한 結果 위와 같은 問題點을 提起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는 上記한 問題點에 대한 對策方案을 具體的으로 提案하고자 한다.

問題點 ①에 대하여서는 IMO를 통하여 :

1) 各國이 汚染防止에 關한 教育을 海技士에게 철저히 실시하고

免許試驗上 汚染을 防止하기 為한 科目을 必須 教育科目으로 挿入할 것을 提案한다.

2) 船體構造에 있어서 坐礁나 衝突이 發生하더라도 기름이 海上에 流出되지 않도록 研究 改善할 것을 提案한다.

3) 또 이 問題는 法的인 方法만으로서 解決될 수 없으므로 工學的, 生態學的, 地理學的인 여러 分野의 學問과 共同으로 研究하여 最善의 結果를 얻도록 努力할 것을 提案한다.<sup>33)</sup>

問題點 ②에 대하여 :

가령 公海上에서, 기름 汚染事故가 發生했을 경우에는 過剩 介入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事故에 대하여 措置를 取하기 前에 旗國의 提請에 의하여 IMO를 비롯한 國際機構에서 方針을 決定하여 주는 原則을 樹立할 것을 提案한다.

問題點 ③에 대하여 :

公海上에서 發生한 기름 汚染事故에 대한 防止와 介入을 為하여는 技術的 問題가 반드시 隨伴되므로 后進國이나, 開發途上國에는 그 汚染을 解消할 能力이 不足하기 때문에 現存하는 國際機構를 強化하는 동시에 適切한 범위로 地域的 國際機構를 新設하고 그 機能을 強化하여 汚染의 擴大 阻止와 介入權行使의 원활을 기하도록 할 것을 提案한다.

---

註33) 小田 滋, 海洋法研究, 1975. p.33.

問題點 (4)에 대하여;

領海밖의 遠距離에서 汚染事故가 發生하여 管轄이 모호할 때, 그附近의 國家가 地域的으로 協力해서 汚染에 對處해야 한 内容도 協約에 插入되어야 한 것으로 생각한다.

### (3) Intervention PROT

기본 以外의 物質에 의한 汚染事故가 發生하고 있는 現實에 비추어 이로 因한 汚染事故도 기존 汚染事故와 동일하게 取扱하여 그에 對한 制裁를 가하는 것도 當然히 이 協約에 插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理由때문에 1964年 會議는 IMO가 처음 以外의 다른 物質에 의한 汚染에 대하여 모든 利害關係國과 協力하여 그 임무를 強化해야 한다고 勸告했다. 이 勸告에 따라 IMO와 특히 法律委員會가 차를 以外의 有害な 物質에 對한 汚染事故에 있어서 介入할 것을 主張하였다.

또한 海上污染事故에 있어 公海上의 介入權은 協約의 第1條 第1項과 같은趣旨로 其他 汚染物質에 대하여도 새로운 會議가 IMO의 後援下에 London에서 열렸던 바, 그 結果 議定書의 第1條 第1項으로 차를 以外의 다른 物質에 대하여도 規定하게 되었다.

그 내용으로서는;

- (1) IMO에 의하여 指名된 適切한 機關에 의하여 作成되고 이 議定書에 附屬되는 目錄에 열거되어 있는 物質
- (2) 人間의 健康에 害를 끼치고 生物資源과 海洋生物에 有害하고 관

광자원을 損傷하여 海洋의 合法的 利用을 妨害하는 物質.

(4) 1982 年 UN 海洋法協約

(가) 海洋法 協約上의 公害法規의 · 편제<sup>34)</sup>

1982 年 UN 海洋法 協約上의 公害法規에 관하여는 편제상 두 가지로 나누어 說明할 수 있다. 하나는 第 12 章 「海洋環境의 保護와 保存」이라는 題目 아래 46 個 條文을 두고 있는 주된 부문인데 海洋環境法規의 끌격은 거의 第 12 章에 規定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第 12 章에 屬하지 않지만 단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海洋環境에 關聯되는 規定이다. 領海, 公海, 經濟水域, 大陸棚, 國際深海底 등 여러 부분에 海洋環境에 關聯된 規定들이 包含되어 있다.

(나) 海洋法의 注意的 規制

海洋法協約 第 221 條에서 公海上에서 海難事故에 의하여 發生하는 汚染을 防止하기 為하여<sup>35)</sup> 沿岸國은 遭難船에 대하여 適切한 措置를 行할 權利를 규정하고 있다.

이 規定은 沿岸國의 措置權을 國際慣習性과 協約에 따라서 (pursuant to international law, customary and conventional) 認定된 것이기 때문에 創設的 規定이 아니라 宣言的 規定인 것이다.<sup>36)</sup> 비록 宣言的인 뜻을 가진 規定이라 하더라도 沿岸國의 海洋環境保護權은 海洋의 汚染을 防止 (to prevent), 減少 (to reduce) 및 規制 (to control)하

註 34) 朴春浩, 柳炳華, 海洋法, 民音社, 1986.3. p.174.

35) S.Mankabad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sation", Croom Helm London & Sydney, 1984. p.294.

가 爲하여 가능한 最善의 方法 (the best practicable means) 을 利用하도록 許容하고 있다.<sup>36)</sup> 船舶에 關하여서는 事故防止, 緊急措置, 海上安全의 確保,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인 排出防止, 設計, 建造, 設備 및 船舶의 運航과 船員管理에 關하여 實踐적인 措置를 마련하여야 한다<sup>37)</sup> 그리고 이러한 海洋環境의 保存措置에 關한 旗國의 立法措置는 權限이 있는 國際機構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또는 一般外交官會議 (general diplomatic conference)에서 成案된 國際規則 및 基準과 同一한 效力を 갖도록 해야한다.<sup>38)</sup> 또한 沿岸國 海洋環境保存權을 領海以遠의 排他的 經濟水域 (Exclusive Economic Zone-EEZ) 에서 執行할 때도 船舶旗國과 同一한 水準의 立法措置를 마련할 수 있다.<sup>39)</sup>

이러한立法措置를 토대로 沿岸國이 海洋環境의 保存을 積極的으로  
執行하는 과정에서 外國籍 船舶에 대해서는 沿岸國 政府의 公務에 종  
사하고 또 그것을 나타내고 公認한 標識을 가진 公務員, 軍艦, 軍用機  
또는 기타 船舶과 航空機로써 執行해야 한다.<sup>40)</sup>

海難救助와 關聯하여 遭難船舶에 의한 海洋污染의 危險을 實際로 防止하기 為해서 規定하고 있는 第 221 條의 沿岸國 介入權은 그 性質上

<sup>註 36</sup>) 1982, UN 海洋法協約 第 194 條 第 1 項

<sup>37)</sup> 1982, UN 海洋法協約 第194條 第32項

<sup>38)</sup> 1982, UN 海洋法協約 第 211 條 第 22 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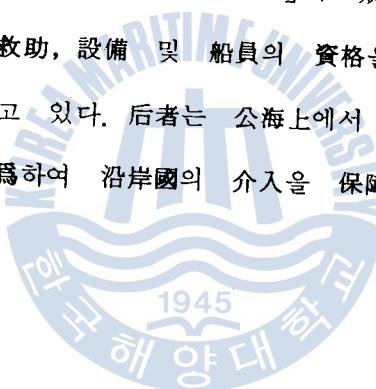
29) 1982, UN 海洋法協約 第 211 條 第 52 項

49) 1982 UN 海洋法協約 第 225 條

宣言的 意義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이 介入權의 行使權은 傳習的이고  
傳統的인 國際法에 따라야 함을 前提要件으로 明示하고 있으나, 實質적  
으로 國際法上 遭難船舶의 海洋污染 問題가 1967年 Torrey Canyon  
號 事件 以后에 發生된 最近來의 問題이기 때문에 國際慣習法 또는  
傳統的 國際法上 確立된 法理論이 없는 實情이다.

그러나 豫防的 側面에서 國際的으로 海洋公法이 立法되어 있다. 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3年 船舶으로부터 海洋污染을 防止하  
기 為한 協約」, 「Intervention 1969」가 있다.

前者는 船舶의 救助, 設備 및 船員의 資格을 規制하여 海洋污染의  
防止海域을 法定하고 있다. 后者는 公海上에서 發生한 海洋污染의 發生  
問題를 除去하기 為하여 沿岸國의 介入을 保障하고 있다.



### 第3章 海難救助協約과 沿岸國의 介入權

#### 1. 改正作業의 現況과 背景

國際海事機構가 海難救助에 關한 國際海事法 條約인 「1910年 海難에 있어서 救援 및 救助에 關한 規定의 統一에 關한 協約」(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specting Assistance and Salvage at Sea, 1910)을 中心으로 한 海難救助의 法制을 再檢討하기 始作하였다.

海難救助法制가 問題가 된 時期는 앞에서 살펴본 Torrey Canyon號事件以后 海上에서 發生한 大型 油槽船의 坐礁 등에 의한 海難事故로 말미암아 沿岸國의 海岸이 流出油 때문에 크게 汚染이 된 때 부터이다. 특히 1978年 3月 16日 프랑스의 北西海洋에서 Amoco Cadiz號<sup>1)</sup>

註1) “1978年3月16日, 原油를 極載한 Liberia船籍의 Amoco Cadiz號가 英國海峽에 進入한 무렵 同船舶의 操舵裝置에 异常이 생겼으나 擔當者는 이를 修理하거나 非常操舵裝置를 作動시킬 수 없었다. 當時 同船舶은 海洋에서 10 mile 정도 멀어져 있었으므로 正常한 절차를 거쳐 速度 이즈標準契約書의 條件에 따라 牽引作業이 行하여졌다. 牽引船이 速力을 대자 牽引線(towing hawser)이 풀렸는데 牵引船의 船長은 이선을 잡지 못하였고 다른 牵引船이 연결되기 前에 Amoco Cadiz號는 Brittany海岸의 바위에 坐礁되었다. 그結果 223,000 ton의 史上最大의 油類污染事故가 發生되었던 것이다.” 金東勳 海難救助에 관한 新條約案과 1980年 이즈海難救助 標準契約書의 關聯性, 韓國海運學會誌 第2號 1984, 7  
이에 대하여 海難에 대한 沿岸國保護의 관점은  
A Secretariat Study of Certain Legal Aspects of Intervention  
Notification and Salvage in respect of Incidents' like the 'Amoco Cadiz' IMO Misc.(78)7.E.15 September 1978.

의 坐礁로 大量의 기름이 흘러나와 沿岸을 크게 汚染시킨 事故에서 프랑스 政府가 海難救助의 遷延으로 因한 問題를 解決하기 為하여 現行 海難救助의 法律問題를 檢討할 것을 提起하였다.

Amoco Cadiz 號는 황천항해中에 操舵設備의 故障으로 船體가 沿岸으로 밀려서 坐礁되었다. 이 船舶은 操縱不能의 狀態에 빠져 危險에 처해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船舶所有者와 救助者 사이에 救助條件에 關한 協議로 많은 時間을 消費하여 救助作業의 時期를 놓치게 되었다.

序論에서 問題點으로 지적되었듯이 現行의 海難救助契約이 遭難 船舶의 所有者와 救助者의 契約自由의 原則에 의하여 決定되기 때문에 이 事故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公共利益 (public policy)이 侵害되는 結果를 자아내게 한다.

이 理由로 프랑스 政府는 現行의 海難救助에 關한 法制度의 改善이 必要하다는 主張을 提示하였다.<sup>2)</sup>

註2) 프랑스는 Amoco Cadiz 號 事故의 結果 1978年3月26日 다음과 같은 內容이 包含된 한 規則을 公布하였다.

第1條. 油類를 輸送하고 있는 모든 탱커는 本船舶이 프랑스 領海에 到着하는 日時, 本船位置, 航路 및 輸損貨物의 明細를 프랑스 Maritime Prefecture에 通報할것.

第2條. 프랑스 沿岸 50海里 以內에 있어서 事故를 誘發시킨 탱커의 船長은 즉시 Maritime Prefecture에 通報할것.

第3條. 前記 50海里 以內의 他船보다도 용이하게 援助를 할수 있는 救助船의 船長은 Maritime Prefecture에 事故의 位置 및 種類를 通知하고 定期的으로 狀況을 報告 情報提供을 계속할것.

油濁關係國際條約と 世界各國의 油濁法 規制 日本タクター協會 1982.  
3. pp.92 - 93.

프랑스 政府의 提案은 海難의 結果 汚染損害를 입을 危險이 있는  
 沿岸國은 遭難船舶의 救助에 積極 介入함으로써 汚染損害를 防止하기  
 為한 介入權이 必要하며<sup>3)</sup> 이를 為해서는 모든 遭難船舶의 船長은 沿岸  
 國에 海難의 通知義務를 負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sup>4)</sup>

Amoco Cadiz 號의 海難事故에서 나타난 問題點을 制度的으로 解決하  
 기 為하여 國際海事機構의 法律委員會 (Legal Committee)는 1978 年  
 第 35 會期 및 第 37 會期, 1979 年의 第 40 會期에서 討議하였다. 第 40 會  
 期에서는 프랑스, 멕시코 및 우루과이의 代表에 의하여 作成된 研究報  
 告書 「Amoco Cadiz 號 海難에서 發生한 法律問題에 關한 考察」 (Consi-  
 deration of Legal Questions arising from the 'Amoco Cadiz' Disast-  
 er)<sup>5)</sup> 이 提出되었다. 이 報告書는 「沿岸國의 介入에 關한 國際法의 發  
 展을 為한 基本要素를 包含하는 多國 代表의 非公式 諮問에서 作  
 成한 規則草案」 (Draft articles resulting from informal consultaion  
 with several delegations which contain element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relating to intervention of coastal states)  
 이라는 企 名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海難事故의 報告와 沿岸國의  
 介入을 內容으로 하는 新しい 國際條約案으로 提出된 것이다.

이와 同じ로 1980 年 第 44 會期에서 西獨은 「1969 年 以來에 的 한

3) IMO LEG 52/411 Note by the Secretariat.

4) 櫻井玲二, IMOにおける海難救助法制の再検討(上) 海事産業研究所  
 年 1985.1 pp.45

5) IMO Document LEG. XL/2/1, 6 March 1979.

污染事故의 경우에 있어서 公海上의 介入에 關한 國際協約 「International Convention relating to Intervention on the High Seas in cases of Oil Pollution Casualties」의 「改正議定書 草案」(Draft Protocol to the 1969 Intervention Convention)을 提出하였다.<sup>6)</sup> 그리고 1984年 第53會期에서 第44會期때에 提出하였던 改正議定書 草案을 撤回하고 「1969年 介入協約의 選擇的 議定書 草案」(Draft Optional Protocol to the 1969 Intervention Convention)을 提出하였다.

또한 1985年 第54會期에서는 救助問題의 고려, 특히 海難에 있어서 救援 및 救助의 1910年 協約의 改正書 그리고 관련문제 (Consideration of the Question of Salvage In Praticular the Revision of the 1910, Convention on Salvage and Assistance at Sea and related Issues-Public Law Aspects of Salvage Operations)를 提出하였다.<sup>7)</sup>

國際海事機構가 主로 海上汚染을 防止하기 為한 法律體係 (legal framework)를 公法的인 觀點에서 改正問題를 論議함에 따라서 國際海法會 (CMI)는 이 問題에 關하여 私法的 觀點에서 研究를 始作하였고 國際海事機構 第40會期에서 이를 合意하였다.

國際海事機構는 「1910年 海難救助協約」을 改正하기 為하여 國際小委

---

註6) IMO. Document LEG.XL/V/6. 17. October. 1980.

7) IMO. Document LEG. 54/4/5. 27. February. 1985.

員會를 設置하였고, 이 小委員會의 研究를 바탕으로 하여 1981年 5月  
카나다 몬트리얼에서 열린 第32回 國際會議에서 「1910年 協約」을  
代替하는 새로운 「1981年 海難救助에 관한 國際協約草案」을 承認  
국際海事機構에 提出하였다.

A large, semi-transparent watermark of the Korea Maritime University logo is centered on the page. The logo is circular with a blue background. Inside the circle, at the top, is the university's name in English, "KOREA MARITIME UNIVERSITY". In the center is a stylized white ship icon. At the bottom, the year "1945" is written above the Korean text "한국 해양 대학교".

（六）對外開放政策的問題，解決計畫。

- 問題 ④ 並依序으로 解説하는 바는

  - ① Protocol of 1984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69
  - ②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1971

11) 問題點에 대한 具體的인 内容은  
 李俊秀, 便宜置籍船에 관한 研究 韓國海洋大學 海運研究所. 1983. 4.  
 木畠公一, マルシンブと便宜置籍船, 1977.

起하였다. 이러한 問題點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①의 海難救助에 關한 것이었다.

프랑스 政府의 提出理由는 다음과 같다.<sup>12)</sup> 「海難救助에 關한 法制는 時代錯誤的인 것으로서 基本的으로 再檢討가 必要하다. 船舶과 積荷의 滅失이 船舶所有者와 貨主 및 救助者の 利害에만 關係하던 時代는 1910年 協約에 의한 法制로써 충분하다. 不成功 無報酬(No cure, No pay) 的 契約方式은 分明히 海難救助契約當事者の 利害가 서로一致하는 것 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汚染의 潛在的 被害者인 또 하나의 当事者로서 沿岸國이 存在한다. 그 結果 被害를 輕減하기 為한 모든 것을 尸行할 것을 要求하는 被害者와 救助費用을 낮추기를 希望하는 船長 또는 船舶所有者 및 救助契約을 締結하여 船舶과 貨物을 救助하기 為하여 最善의 救助努力을 해야함과 同時に 그 最大的 利益을 바라는 救助者 사이에는 潛在的 利益이 對立하고 있다. 그리고 로이즈 海難救助契約標準契約書(Lloyd's Open Form of Salvage Agreement: LOF)는 理論上 報酬條項에 번잡함이 없이 契約을 締結하는 것이 可能한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契約에 署名하기 前에 있어서 折衷은 그렇게 간단하지 아니한다. 요컨데 救助活動의 結果에 대하여 直接 利害關係를 가지는 一方當事者가 救助의 折衷 決定 또는 實行에 關하여 어떠한 關與도 할 수 없는 現行 體制의 繼續은 이미 存在價值에 대해 疑問性이 提起된 것이다.」

註12) IMO, MSC XXXVIII/21/Add./ pp: 10 - 11.

이趣旨는 「 1910 年 海難救助協約은 遭難船의 船舶所有者와 救助者 사이의 私法的 關係만을 取扱하였기 때문에 海難으로 말미암아 實際로 被害者が 되는 沿岸國의 利益이 排除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沿岸國의 介入權을 規定한 「 Intervention 1969」도 Amoco Cadiz 號와 같은 事故에 있어서는 그 有効性에 대하여 問題點이 시작되고 있다. 왜냐하면 沿岸國의 介入要件으로서 汚染事故가 沿岸國의 利益에 “重大的且急迫의 危險”(grave and imminent)이 있어야 할 것을 規定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Amoco Cadiz 號의 事故에서 實際上 汚染을 일으킬 急迫한 危險은 있었지만 「 Intervention 1969」에 적용하는 데는 適用要件를 충족해 滿足시킬 수가 없었다. 따라서 大型 污染事故의 경우에는 社會的 責任을 바탕으로 沿岸國은 비록 그 事故가 「 Intervention 1969」의 要件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實質적으로 汚染防止를 為す 自衛權이 認定되어야 할 必要가 있다는 45세이다. 물론 國際慣習法에 의하여서도 沿岸國은 自國의 利益을 지키기 為하여 介入權을 가지고 있으며, 이 協約은 介入權의 要件을 엄격하게 制限的으로 規定한 點을 지적하였다.

프랑스는 UN 第3次 海洋法會議의 合意를 基礎로 해서 沿岸국이 遭難船에 대하여 救助措置를 取할 것은 海洋法協約에 規定되도록 主張하였고 介入權行使의 對象인 船舶의 旗國이 海洋法協約을 批准하였을 때 關係없이 一律的으로 適用될 것을 主張하였다.

그리고 沿岸國의 介入權을 効果的으로 執行하기 為하여는 먼저 遭難情報은 迅速하게入手할 必要性이 있다. 이를 為하여 船舶의 安全性에

威脅이 되는 事故가 發生한 경우에는 遭難船의 船長은 救助船의 支援 을 請求하기 前이라도 가장 가까운 沿岸國과 旗國에 대하여 遭難의 現況을 強制的으로 報告하도록 法定義務를 지울 必要가 있다. 또한 遭難船舶을 救助하는 救助者도 救助活動의 事實을 가장 가까운 沿岸國에 報告할 義務가 必要하다.

法理論上 沿岸國의 介入權問題와 遭難의 報告義務는 私法上의 問題가 아니라 公法上의 問題로서 性質이 더욱 强하다. 그러나 프랑스는 Amoco Cadiz 號 事件의 被害當事國으로서 沿岸國의 介入權이 制限되는 現行 法體系를 改正하기 보다도 新條約을 締結하도록 提案하였다.

### 3. 國際海事機構의 研究報告書<sup>13)</sup>

#### (1) 汚染事故의 報告問題

MARPOL 協約 第8條 有害物質에 關聯된 事故의 報告 ( Reports on Incidents Involving Harmful Substances ) 및 議定書 I, 有害物質에 關聯된 事故의 報告에 關한 規定 ( Protocol I. Provisions concerning Reports on Incidents involving Harmful Substances )에서 船舶의 汚染事故에 關한 報告節次를 자세하게 規定하고 있다. 또한 國際海事機構의 海洋環境保護委員會 ( MSC )가 綜合的인 海洋污染對策의 指針의 一部分으로서 MARPOL의 規定을 明白히 하기 為하여 가이드 라인을 作成中에 있다.

---

註13) IMO. LEG XXXVII/2

그리고 기름汙染을 防止하기 為하여 地域國家間에 締結한 國際協定에  
서 報告節次를 規定하고 있다. 즉 「1976年 地中海의 污染防止에 關  
한 巴塞隆納協約」(Barcelona Convention of 1976 for the Pro-  
tection of the Mediterranean Sea and the Prevention of Pollution  
of the Mediterranean Sea by Dumping from Ship and Aircraft)과 「緊  
急時에 따른 바다에 有害物質의 의한 地中海의 污染處理에 關する 協力의  
議定書」(The Protocol concerning Cooperation in Combating  
Pollution of the Mediterranean Sea by Oil and other Harmful  
Substances in cases of Emergency)는 締約國 政府에게 通報義務를 規定  
하고 있으며, 이를 為하여 通信設備를 整備함과 同時に 情報센터를 設  
置함의 作用을 規定하고 있다.<sup>14)</sup>

이 때에 이미 UN 第3次 海洋法會議에서 作成한 海洋法協約 草案  
中 第211條은 船舶에 의한 海洋環境의 污染을 防止하고 輕減시키며  
도와 規制하기 위하여 國際機關 連合 外交會議是 始初서 國際的인 基  
礎적 基準을 制定한 것과 각國은 自國船舶에 의한 污染의 防止 輕減

註14) 地中海 污染防止協約에 의한 情報센터는 1976年 12月 國際海事機構의  
支援을 빌아서 말타에 設置하였다.

地域國家間의 海上污染防止를 為한 國際條約을 다음과 같다.

① London Agreement concerning Pollution of North Sea by Oil, 1969.

② Copenhagen Agreement, 1971.

③ Italian-Yugoslavia Agreement on Cooper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Waters of the Adriatic Sea, 1974.

④ Danish Swedish Agreement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Sound, 1974.

⑤ Canadian-United States Agreement relating to the Establish-  
ment of Joint Pollution.

또는 規制를 爲하여 國內法令을 立法하여야 하며 立法된 國內法은 國際機構 또는 外交會議에서 採擇된 國際規則 및 基準과 同一한 效果를 가질 것을 定하고 있었다. 이 規定은 1978年 봄 海洋法會議 第7會期에서 「海難으로 沿岸 또는 關係利益이 損害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沿岸國에 迅速하게 通知할 것」을 追加하여 新設하였다.

國際海事機構는 위의 內容을 解說文으로 하고서 다음과 같은 點을 船舶의 海洋汚染事故와 關聯하여 報告事項으로 檢討하여야 할 것으로 列舉하고 있다.

- ① 報告義務를 船長이 직접 지도록 할 것인가 (MARPOL에 의거한) 아니면 船長으로 하여금 報告토록 할義務를 船舶旗國이 쳐야 할 것인가 (本協約 또는 바르셀로나協約과 같이)
- ② 沿岸國은 船長의 報告를 迅速하게 受領하고 傳達하기 爲하여 機構를 設置할義務를 질것인가. (MARPOL에서는 締約國이 擔當機構를 設置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 ③ 報告義務의 實行方法으로서 報告時期는 沿岸國이 要求하는때 일 것인가 또는 海難이 發生한 後일 것인가.
- ④ 船長의 報告行爲를 嘉獎하기 爲하여 報告된 行爲와 關聯하여 船長에게 訴追의 免責을 許容할 것인가.
- ⑤ 船長 또는 締約國이 報告 또는 通報를 계을리한 경우에 어떠한措置가 마련되어야 할 것인가.

#### (2) 沿岸國의 介入權 問題

國際海事機構事務局의 報告書에는 UN海洋法協約을 中心으로 하여 沿

新編 朝鮮文庫 第二集 朝鮮民族の歴史と文化

<sup>10</sup> See, for example, the discuss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cept of "cultural capital" and the concept of "cultural value" in the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of *Cultural Capital* on "Cultural Capital and Cultural Value," edited by Michael Lambeth and Michael Sparer (Vol. 12, No. 1, 2008).

卷之三十一

法語文法 · 第二編 · 第二章

徵兆內容：外國籍船舶時、海難事故時、觸礁時、發生碰撞、海洋污染時  
危險：則時、防止碰撞、總避讓、沿岸國의、外國船舶時、破壞等로  
其： 경우의、있으서、介入要作의、事實上、問題가、된 結果로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地球의 海洋環境保全이라는 側面에서 介入要件은 當然히 國際規則 또는 條約의 內容과 一致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4) 領海 以遠에서의 介入權

海洋法協約 第 221 條는 沿岸國이 海難에 따르는 汚染으로부터 自國의 沿岸을 지키기 위하여 實際 또는 危險스러운 損害에 比例하는 措置를 領海 以遠까지 取得 權利를 侵害하지 아니한다고 規定하여 沿岸國의 自衛的 介入權을 明示하고 있다. 그러나 이 條項의 性質이 단순하게 지금까지 國際法上 認定하고 있는 事項을 注意的으로 規定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海洋法制에 의하여 沿岸國에게 인정하는 創設的 規定인지에 關하여는 分明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만일 지금까지 國際法上 認定하고 있었다면 沿岸國의 經濟水域과 公海上에 있어서 介入權은 그 근거가 國際慣習法에 의하여 認定된 것인가 아니면 條約에 의한 것인가 分明하지 못하다는 點이다.<sup>15)45</sup>

1 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一般的으로 海洋法協約의 海洋環境保存에 關한 規定이 沿岸國의 排他的 權利를 確定的으로 明示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미 存在하고 있었던 權利를 注意的으로 規定한 것에 지나지

---

註15) Intervention 1969 第 1 條 및 第 2 條 第 1 項

그러나 沿岸國은 外國船舶이 沿岸國의 接續水域의 設定에 의하여 保護하고자하는 關稅, 財政, 出入國管理, 衛生 또는 汚染에 關한 侵害일 경우에는 계속 追跡權을 가진다.

(Brierly, The Law of Nations, 6th.ed. 1963. p.314.)

UN海洋法協約 第 56 條 1 項

아니하다고 解釋하고 있으며, 더우기 海洋環境을 保存하기 為하여 沿岸國의 介入權을 認定한다는 國際慣習法의 存在與否와 國際慣習法이 存在한다면 그 內容에 關해서 海洋法協約은 밝히지 않고 있다.

#### 4) 沿岸國 介入權行使와 關聯된 問題點

國際海事機構는 沿岸國의 介入權을 行使하기 為해서는 現行法制上 다음 사항을 먼저 研究 檢討할 必要가 있다고 報告書에서 列舉하고 있다.

① 沿岸國은 Intervention 1969에 規定된 條件과 節次에 따라서 行하여야 하는가. 만일 關係가 없다면 別途의 國際基準을 設定할 必要가 있는가.

② 沿岸國의 介入權은 船舶의 海難事故가 없어도 自國의 利益에 대하여 重大한 損害를 防止하기 為한 一般原則으로서 認定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Intervention 1969에서와 같이 重大하고 急迫한 危險이라는 條件에서만 이를 認定할 것인가.

③ 沿岸國이 行할 措置內容 例전에 強制導船制 또는 船舶의 破壞 등과 같은 것을 國際協約에 詳細히 明示할 것인가.

④ 沿岸國이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救援 또는 救助活動을 함에 있어서 沿岸國이 이를 스스로 尸行할 것인가 또는 他人에게 이를 행하도록 할 것인가. 또 이경우에 救援 및 救助의 必要性에 대한 決定權을 沿岸國이 가질 것인가. 아니면 船長이 가질 것인가.

⑤ 沿岸國은 自國의 遭難船舶에 대해서만 救援 救助活動을 要求할 것인가 또는 沿岸國의 領海內에 있는 모든 船舶에 대하여 要求

할 것인가.

⑥ 沿岸國이 要求한 救援 救助活動을 行한 者에 대하여 沿岸國은 救助料 및 그 作業에 關聯된 責任補償을 어떠한 方法으로 負擔할 것인가.

#### 四 海難救助

現在의 海難救助의 法制에 關하여 다음과 같은 問題點을 報告書에서 지적하고 있다.

「1910年 海難救助協約」은 基本的으로 自發的인 海難救助活動을 嘉勵하고 있으며 이것은 契約自由의 原則을 바탕으로 하는 私法的 國際條約이다.<sup>16)</sup> 그러나 오늘날 大型의 海難事故는 公共機關의 協力乃至指揮아래 救助活動이 行하여지고 있으면, 沿岸國은 汚染損害를 防止하거나 極小化하기 為하여 海難救助를 要求하거나 또는 이 作業을 直接監督할 必要가 있다. 그러므로<sup>45)</sup> 自發的인 海難救助活動을 바탕으로 하는 傳統的인 海難救助法制로서는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沿岸國 및 利害關係當事者의 權利 義務를 明示的으로 規定할 必要가 있다. 그 具體的인 問題點은 다음과 같다.

① 海難救助의 要請을 決定하는 사람은 船長 또는 船舶所有者에게만 委任되어 있는가.

註16) 金東勳, 前揭論文 pp. 243 — 265.

Anthony R. Miller, *Lloyd's Standard Form of Salvage Agreement - LOF 1980 : A Commentary*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 12, No. 2, January, 1981.

② 표류중인 船舶에 대하여 沿岸國이 強制的으로 救助를 받도록 할 權利를 定할 必要는 없는가.

③ 沿岸國의 救助命令에 따라서 救助活動을 實行한 個人에 대한 救助料는 어떻게 할 것인가.

④ 個人이 救助作業을 實行할 때 第3者에 대하여 負擔한 責任에 대하여서도 規定할 必要가 있는 것이 아닌가.

### (3) 沿岸國의 介入原則

1978年 11月에 開催된 37會期에서 프랑스 멕시코 및 카나다의 3個國은 共同으로 沿岸國 介入과 海難救助의 問題에 관한 基本原則을 提出하였다.<sup>17)</sup>

① 領海 以遠에서의 介入權: 海難이 發生한 경우에 沿岸國의 海岸을 保護하기 為하여 領海 以遠에서의 介入할 權利는 國際慣習法 및 條約에 의하여 認定된 沿岸國의 固有한 權利이다.

② 沿岸國이 介入權을 行使하기 為하여는 遭難船舶 또는 海難의 發生을 알고 있는 사람은 沿岸國에 이를 報告할 義務를 지우는 것이 必要하다.<sup>18)</sup>

③ 沿岸國이 海難의 發生을 안 경우에는 介入權을 行使할 것인

---

註17) IMO LEG XXXVII/2의 Annex III

18) 報告義務制度 :

韓國 - 大統領命令에 指定된 量 以上의 油類를 海洋에 排出한 경우 船長은 지체없이 당해사고의 시간, 장소, 배출량 등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지 아니할 것인지를 決定하고 만일 行使할 경우에는 救助料 決定때문에 救助가 늦어지는 것을 防止하기 為하여 遭難船의 救助要請을 받은 救助者에게 바로 救助作業을 實施하도록 要求할 수 있다. 救助者は 衡平에 적합한 報酬를 支給받아야 한다.

(4) 沿岸國은 스스로 救助措置를 提供한 경우에는 救助活動의 全般을 監督하고 그 責任을 져야한다.

#### 4. 沿岸國 介入에 關한 新提案

##### (1) 프랑스, 멕시코, 우루과이의 共同案

1978年 6月 國際海事機構 法律委員會 第40會期에 있어서 프랑스 멕시코 및 우루과이 3個國이 Intervention 1969 와는 別途의 새로운 協約案을 提案하였다. 즉 이 3個國은 「數個國 代表의 非公式 協議에 의한 沿岸國 介入에 關한 國際法 發展의 要素를 包含한 條項草案」 (Draft articles resulting from informal consultation with several delegations which contain elements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relating to intervention of coastal state)<sup>19)</sup> 을 提出하여 海難救助에 關한 沿岸國의 介入權을 國際法으로 法制化할 것을 主張하였다.

##### ① 立法目的(第1條)

協約當事國은 매우 危險한 結果 (major harmful consequences) 를 合理

---

註19) IMO. Document LEG XL/2/1, 6. March 1979.

法律委員會 第40會期에 提出

의으로 豫見할 수 있는 海難事故에 隨伴하는 汚染 또는 汚染의 危險 혹은 海難事故와 關聯된 行為로부터 沿岸 또는 利害關係人에게 汚染 또는 汚染의 危險을 防止하거나 減少시키는 또는 제거하기 為하여 必要한 措置를 旗海 以遠에서도 取할 수 있다. 다만 이 協約에 의하여 軍艦 또는 國家가 所有하거나 運航하는 其他 船舶 및 一時으로 政府의 非商業的 活動에 使用하는 其他 船舶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 (b) 定義(第2條)

- [1] 海難事故(Maritime Casualty)라 함은 船舶 또는 貨物에 實質的 損傷(material damage) 또는 實質의 위 損傷에 緊急한 威脅(imminent threat of material damage)을 招來하는 한 船舶의 衝突 or 碰撞 또는 航海事故 혹은 船舶의 内外에 있어서의 其他 事故를 指한다.
- [2] 船舶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a) 船型에 關係없이 모든 海航船(seagoing vessel)은 指한다.
  - (b) 海底와 大洋底 및 海底地層의 資源의 探查와 開發에 利用되는 施設과 裝備를 除外한 또는 船舶類
- [3] 沿岸國은 船舶의 活動에 關連되는 沿岸國의 利益과 資源을 指한다.
- [4] 機構란 國際海事機構를 指한다.

고 또한 影響을 받을 것으로豫想되는 모든 沿岸國이 要求하는 바의 情報을 迅速하게 提供하여야 한다.

(4) 海難事故의 通知(第3條)<sup>20)</sup>

[1] 沿岸國이 第1條에 따라서 어떠한 措置를 取할 것인가 또는 아니할 것인가를 決定하는 것을 돋기 為하여 附屬書Ⅰ에 明示된 物質을 運搬하는 모든 船舶 혹은 燃料油量 ○○○ton 以上을 가진 모든 船舶 및 領海의 幅을 測定하는데 使用하는 基線에서 ○○海里 以內 또는 附屬書Ⅱ에 明示된 구역 以內에서 생긴 海難事故의 災難을 가장 가까운 沿岸國에 즉시 通報하여야 한다.

[2] 이 通知는 最善의 利用 可能한 手段으로써 實行되어야 하고 또한 海難事故의 자세한 內容 및 海難事故의 影響을 除去하기 為하여 取했거나 또는 고려하였던 措置를 包含하여 通知하여야 한다.

[3] 이 條의 第1項에 規定한 通知를 受信한 沿岸國은 다음의 國家 및 機構에 대하여 最善의 利用 可能한 手段으로써 곧 바로 傳達하여야 한다.

- (a) 事故때문에 나쁜 影響을 받을 수 있는 隣接國家
- (b) 海難事故를 일으킨 船舶의 旗國
- (c) 機構

[4] 船舶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沿岸國과 交信을 繼續하여야 하

註20) 다음과 같은 事項을 자세하게 규정할 수도 있다.

- ① 선상 또는 선박에 생긴사고, 선상의 화재
- ② 만일 선체, 주추진기관, 조타장비, 닻 및 닻줄 레이다 컴파스 또는 기본무선설비에 결함이 있는 경우의 그 결함

生한 費用 및 發生될 危險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 (5) 救助料支給(第6條)

船難事故의 關聯되 船舶의 所有者는 이 協約에 따라서 取한 모든

이 草案에서 提示한 危險이란 概念은 매우 抽象的인 性格으로 表現 되어 있다고 본다. 만일 沿岸國이 危險이라는 概念을 一般的이고 抽象的으로 解釋할 경우에는 結果的으로 介入權의 滥用이 豐應된다. 그러나므로 危險은 實際로 海岸線 또는 領海內의 水域에 汚染을 일으키거나 또는 汚染損害가 發生할 수 있는 實際性이 있는 경우로 한정할 必要가 있다.

#### 4 救助契約

이 案에 의하여 沿岸國이 介入權을 行使할 경우 現在 海難 救助가 救助契約에 의하여 實行되는 것 대신에 救助契約이 없더라도 可能하기 때문에 當事國間에 契約이 必要없어진다. 그리고 救助行爲도 沿岸國의 指示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救助行爲는 沿岸國의 直接 管理로 된다. 그러나므로 沿岸國이 救助作業 細部에 대하여 指示하고 管理하게 된 경우에 그 救助契約은 無效가 되며, 救助者는 不成功 無報酬의 原則을 適用하지 않고 衡平의 原則을 바탕으로 하여 救助料를 請求할 수 있다.<sup>22)</sup>

여기서 問題點은 이 案이 汚染의 原因이 된 海難船舶의 措置에 대한 介入權을 沿岸國에 주자는 것에 立法趣旨가 있는 것이라, 救助活動의 手段인 救助者の 活動 및 그 報酬인 救助料에 沿岸國의 強制力を 賦與하는 것에 차이 나는데, 그리고 이 案이 沿岸國에게 強制救助權을 為한 指示權을 認定한다고 하더라도 自國內 救助活動에 從事하는 救助者에게

<sup>22)</sup> IMO, LEG 52/4/1, P. 6.

契約을 締結하지 않고 沿岸國의 公權力에 의하여 救助者의 救助活動을 强制할 수 없는 實情이다. 이를 執行하기 為하여 沿岸國은 救助會社와 契約에 의하여 또는 國營의 救助會社를 設立하여 運營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沿岸國이 公權力 또는 救助者와의 契約에 의하여 救助行爲를 强制할 경우에 沿岸國, 救助者 및 海難船舶 사이에 發生하는 紛爭을 解決하기 為하여 紛爭解決節次를 規定할 必要가 있고, 强制的인 執行에 의하여 救助者는 不當한 損害를 입지 않도록 保護措置가 必要하다.

#### 4) 通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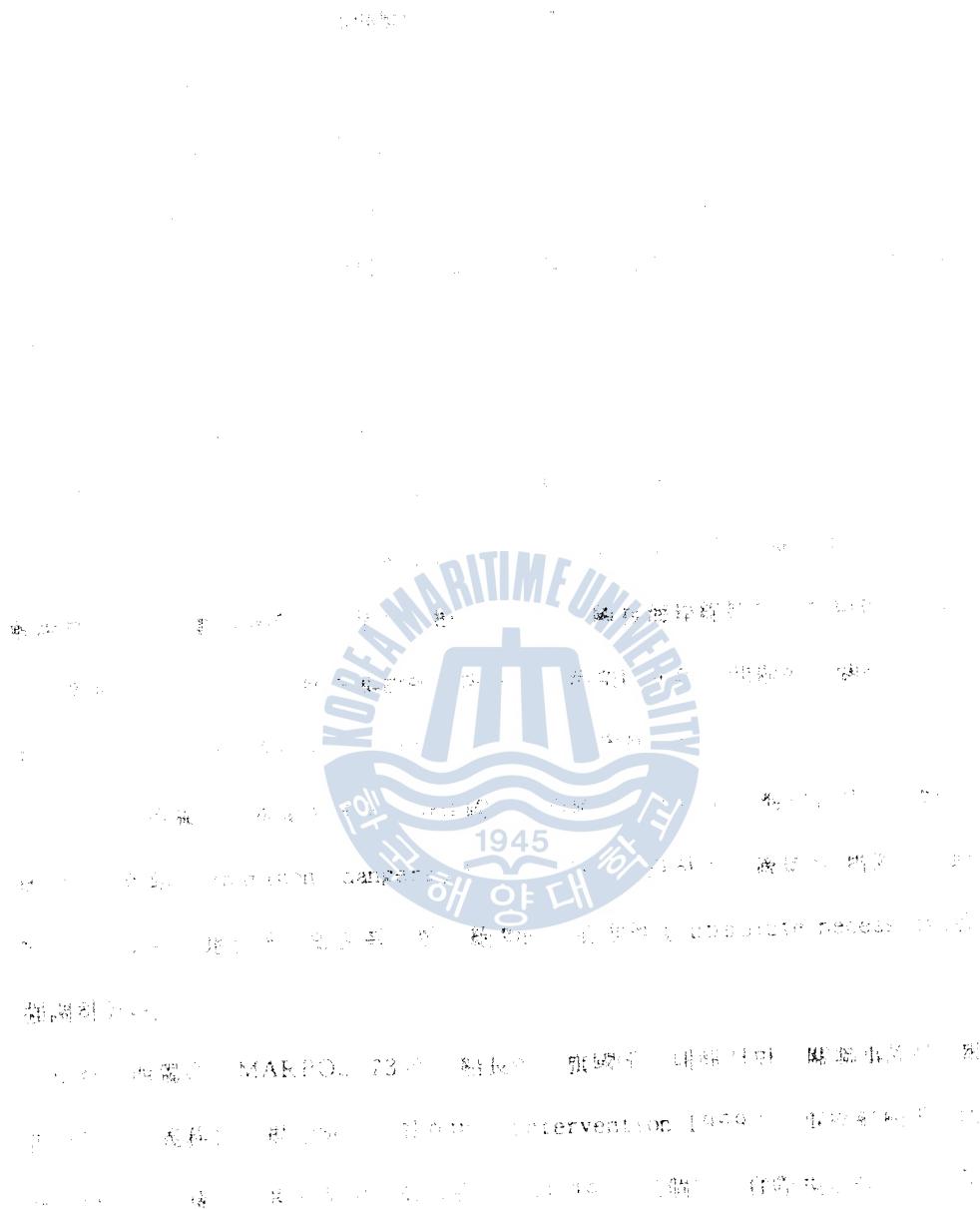
- 沿岸國은 海難救助行爲에 대하여 直接的인 公權力의 介入을 為해서는 먼저 海難船舶으로부터 자세하고 積極的인 報告가 있어야 한다. 通報制度는 Intervention 1969에는 規定하고 있지 않으나, 1973年 國際船舶海洋污染防治協約 議定書 I 有害物質에 關聯된 事故의 報告에 關한 規定(協約 第8條)에 의하여 船舶所有者, 倘船者, 船舶管理人 또는 運行者 등이 無線으로써 締約國의 管轄廳에 報告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協約 第8條 (2)(a))

國際海事機構에서는 MARPOL 73/78 第8條에서 明示한 締約國을 ① 沿岸國 ② 旗國 ③ 港灣國으로 解釋하여 有害物質의 排出과 關聯한 報告節次를 마련하여 發表하였다.<sup>23)</sup>

註23) MARPOL 73/78에 의한 强制報告 시스템과 書式

“財團法”韓國船員船舶問題研究所, 船員船舶誌, 第2號 1985.  
pp.58 - 72.



IMO Document X.IV-6 of 17 October 1980.

國際海事組織《船舶危險物質承運人協約》(詳議付)第17號  
1980年10月17日簽訂於韓國首爾。

包含시켜 提案하였다.

第1條는 締約國은 自國船舶에 대하여 沿岸國에 汚染事故를 強制的으로 報告하도록 規定한 것이고 第2條는 自國의 港, 바다, 터미널, 內水 또는 領海에 있는 救助船에 대하여 혹은 海難에 遭遇한 船舶을 향하여 領海밖으로 航海하고 있는 救助船에 대하여 必要한 救助作業을 命令할 수 있도록 規定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救助作業에 隨伴하는 救助者의 費用 損害 및 第3者의 責任에 대하여 沿岸國은 補償責任을 진다고 規定하고 있다.

#### (1) 草案內容

##### (1) 報告義務(第1條)

① 이 議定書의 締約國은 領海 海域에서 事故를 發生시킨 自國의 船舶이 그 事故에 의하여 直接的으로 影響을 받거나 혹은 威脅을 받는 것이 合理的으로 豊見되는 모든 沿岸國에 그 事故의 자세한 內容을 報告하도록 確定해야 한다.

② 事故란 1973年 國際船舶海洋污染防止協約 第2條4項에 關聯한 모든 事故를 意味한다.

③ 前1項에서 規定한 報告는 위 第2項에서 言及한 協約의 議定書I의 規定에 따라서 可能한 限 지체없이 자세하게 하여야 한다.

④ 事故가 發生한 海域에서 漁業管轄權을 行使하는 沿岸國은 그 事故로 말미암아 影響을 입는 것으로 본다.

##### (2) Intervention 1969 第5條 第1項의 本文에 다음을 追加한다.

「 즉시 措置를 取해야 할 極限의 緊急狀況에서 有害한 結果를 防止하

기 爲한 다른 可能性이 없는 경우에 自發的으로 沿岸國의 港, 바다, 터어미널 内水 혹은 領海內에 있는 救助船에게 또한 海難事故가 난 船舶을 救助하거나 또는 救助作業을 하기 爲하여 領海以遠으로 航進하 고 있는 救助船에게 그러한 措置를 指示할 수 있다.」

내 Intervention 1969의 第 6 條에 다음 第 2 項乃至 第 4 項을 追 加하고, 現行 第 6 條을 第 6 條 1 項으로 한다.

#### ① 現行 第 6 條 本文

(2) 沿岸國은 沿岸國의 指示에 따라서 行한 結果로 救助船이 입은 損害에 대하여 責任이 있다. 그러한 損害에 대한 報償請求는 沿岸國에 대하여 排他的으로 直접하여야 한다.

(3) 救助者は 自身이 支出한 모든 費用 및 救助船이 입은 모든 損害에 관하여 沿岸國에 報償請求權을 가진다. 沿岸國이 救助者에게 支給한 모든 報償金은豫防措置의 費用을 為한 報償으로 본다.

(4) 船舶과 救助者사이의 契約의 合意를 侵害함이 없어 沿岸國의 指示에 따라서 履行한 救援과 救助活動은 沿岸國法律에 따라서 行한 것으로 본다. 救助者が 沿岸國의 指示에 따라서 行하였다 하더라도 船舶 貨物 및 其他 利害關係人에 대하여 沿岸國의 法律上에 規定된 모든 救濟方法의 利用権은 가진다.

救助者は 救援과 救助活動의 過程에서 取한 防止措置의 費用에 관하여 沿岸國의 法律에 따라서 모든 救濟方法을 利用할 権利를 가진다.

#### ② Intervention 1969의 第 8 條 第 1 項에 다음을 追加한다.

「第 5 條 第 1 項 (2)에 따른 措置로 말미암아 또한 결부하여 생긴 모든

든 紛爭에도 同一하게 適用한다.」

## (2) 問題點

西獨이 提案한 改正 議定書는 現在 發效中에 있는 海洋污染關係의 國際協約과 重複되거나, 救助船舶에 대한 指揮權行使 혹은 救助中에 發生한 損害處理 및 救助料 정산에 關與하는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다.

첫째, MARPOL 73/78에 의하여 海洋污染의 報告는 旗國主義를 바탕으로 하여 船舶에 의한 報告制度가 確定되어 있다.

그러므로 同一한 問題에 關하여 規制的 規範이 두개로 나누어지며 通航船舶에 關하여 附加的인 人爲的 規制措置가 우려되므로 立法論上 二重形態로 發展하여 合理性이 不足하다는 指摘을 받을 수 있다.

西獨의 提案과 같이 沿岸國主義를 基礎로 새로운 報告制度를 만들 경우 公海上을 航行하는 船舶에 대하여 沿岸國의 直接 또는 間接의 간섭問題가 생길 수 있고 또한 國際法上 認定된 公海使用의 自由의 原則에 侵害를 받게할 危險性이 크다.

둘째, 海難船舶을 救援 救助하는 船舶에 대하여 沿岸國이 強制的 救助活動을 命令하기 為해서는 救助船 徵發制度가 必要하고 同時에 이를 為해서는 行政的 管理技能이 強化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資本主義 自由主義 經濟體制에서 私有財產의 侵害 可能성이 없지 않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經濟 社會的 危機로 보아 非常權을 發動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點에 대하여서는 비록 沿岸國 國籍의 救助船이라 하더라도 國內法에 의한 報償制度를 明文化하고서 그 保障策이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沿岸國 國籍의 救助船이 없는

據此，事實上，韓美軍事指揮部，中國海警局，韓國海警隊，  
並非，能夠駕馭，指揮韓國海警隊，沿岸國軍，國際基準的，適合的，管轄體制  
力，是，裝備的，確保，對外，統一，行動，以及，操作能力，  
不但，是，事實上，執行，管理，和，制，制限，是，一個，問題。

• 國際地圖標識 • 地圖委員會 • 第二屆會議

國際海事機構 法律委員會 第53會議報告 國際船東聯合會 損難救助協會  
等 『 議定項』 同時에 船岸國의 今「增에 訂하여서 訂議하였다. 『  
議定項』 國際救助聯盟 (International Salvage Union, ISU) 『 航行規則  
』 『 航行規則』 『 航行規則』 『 航行規則』

提案하였다. 즉 프랑스 代表는 沿岸國 介入의 新條約을 反對하는 國際的 輿論을 認識하여 새로운 提案으로서 國際海法會가 提案한 新海難救助協約案에 반드시 介入權을 保障할 수 있는 公法條項을 들것을 提起하였다.

이 問題는 1984. 1.2 1.3 2 日間 國際海事機構 法律委員會에서 論議되었으나 救助協約이 公法分野이기 때문에 法律學의 基本原則論上 不當하다는 名分論과 沿岸國의 海岸線을 保護하여야 한다는 實質論으로 엇갈렸다.<sup>25)</sup>

#### (1) 國際救助聯盟의 意見書

國際救助聯盟은 1910 年 海難救助協約은 오늘날 船舶規模의 大型化, 運送貨物의 多樣化 및 海洋環境의 保存問題 때문에 改正의 必要性을 認定하지만 公法規定을 新設하는 改正을 反對하고 만일 公法規定이 必要하면 別途의 國際條約 또는 Intervention 1969를 改正할 것을 主張하였다.<sup>26)</sup>

그리고 沿岸國의 介入權과 關聯하여 強制的 救助活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理由로 反對立場 또는 疑問을 表示하였다.

- ① 여러나라의 領海가 맞닿는 海域에서 救助活動과 關聯하여 어느 나라가 救助指示의 責任을 질 것인가(北유럽의 海域)
- ② 特定國家가 救助指示를 하더라도 國內의 機關의 利害와 相衝할 경우 各 機關에서 다른 指示가豫想됨으로 單一管轄廳이 必要하다.

註25) IMO. LEG 53/3/2

26) IMO. LEG 53/3/1. p.4

(3) 여러나라가 關聯된 경우 非公式 情報에 의하여 指示하거나 또 는 政治的 壓力 또는 輿論에 의하여 救助指示를 함으로써 海難財產의 利益과 環境保存의 損傷된 危險性이 크다.

(4) 한 國家의 指示대로 救助活動을 行하는 것이 이웃 國家에 不利한 影響을 줄 수 있는 경우에 指示國은 他國을 管轄할 수 있는가 여부의 點이다.

5. 一國에게 他國의 救助者에게 救助命令를 下했을 경우 救助國은 이 명령에 따를 것인가 또는 拒絕하여 救助關係를 終結할 수 있거나

(6) 救助報償은 政府指示에 의한 救助活動을 繼續할 수 있을 만큼 充分해야 한다.

7. 沿岸國이 介入한 경우에 이전 介入權에 實行한 救助作業과 船隻의 責任을 치러 하지 않으면 救助者는 실상과 대 損耗를 索賠할 수 있다.

8. 介入國의 指示에 따른 경우 이로 말미암아 救助者가 第3項에 제한 損害에 대하여 救助者は 介入國에 報償請求權을 가진다.

## (2) コネス의 改正 意見書

포란스 政府는 介入是 介入協約에 대하여는 否定的 意見을 表明해 聯合海法委員會 國際海事機構 法律委員會 第 52 會議에 提出해 1916 年 海難救助協約 改正案에서 公共機關의 指揮에 의한 救助作業 條項(第 1 條, 3 條)을 뺀 것을 改正案으로 提出하였다.<sup>27)</sup>

註27) IMO, LEG 53/3/2, 12 November 1984.

- ① 沿岸國은 海難으로 自國의 沿岸을 汚染 또는 汚染의 威脅으로  
부터 保護하기 為하여 必要한 措置를 取할 수 있다. (1項)
- ② 軍艦 등 公船은 除外한다. (2項)
- ③ 領海基線으로부터 50 海里 以內에서 海難을 당한 船舶은 海難의  
被害를 입을 沿岸國에 措置內容을 包含하여 通報하여야 한다. (3項)
- ④ 海難船舶은 沿岸國과 繼續 通信을 維持하고 沿岸國의 質問에  
즉시 應答해야 한다. (4項)
- ⑤ 海難船舶이 要請한 救助船舶이든 아니든 沿岸國은 必要한 措置  
를 救助人에 指示할 수 있다. 領海밖에 있는 救助船에 대하여도 指示  
할 수 있다. (5項)
- ⑥ 海難船舶이 要請한 救助船이라도 沿岸國에 通信을 維持하고 救  
助作業의 尸行方法을 通知해야 한다. (6項)
- ⑦ 모든 國家는 自國 船舶의 위 6個項을 지킬 것을 保障하여야  
한다. (7項)
- ⑧ 沿岸國은 沿岸國의 指示에 따라 救助를 行한 救助船이 입은  
損害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8項)
- ⑨ 沿岸國의 指示에 따라 救助活動을 尸行한 救助船은 沿岸國에  
대하여 救助費用의 償還(reimbursement) 및 損害의 報償(compensat-  
ion)을 請求할 수 있다. (9項)
- ⑩ 沿岸國의 指示에 따라 救助船이 環境保存을 為하여 實施한 措  
置에 관하여 救助船은 特別 報償을 請求할 수 있다.
- ⑪ 沿岸國은 環境保護를 為하여 取한 措置의 費用과 救助者에게

支給한 特別 報償을 海難船舶의 所有者에게 請求할 權利가 있다.

프랑스가 提案한 위 内容은 基本的으로 第 40 會期에서 提示한 内容과 같다. 그러나 이 案에서는 Intervention 1969 에서 規定한 엄격한 介入要件을 包含하고 있지 않으며, 介入措置를 取하기 前에 遭難船으로 하여금 旗國의 管轄權 및 救助者에 대하여 通知하도록 하는 通知義務規定을 包含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強制的 救助活動을 行해야 할 救助船의 範圍를 擴大하고 海難船舶과 전혀 關係가 없는 救助船에도 미친다는 것이 새로운 點이다.

### (3) 西獨의 改正 意見書

西獨은 法律委員會 第 53 會期에서 「1969 年 公海上 介入協約 」에 관한 選擇的 議定書 草案」(Draft Optional Protocol to the 1969 Intervention Convention)을 새로이 提案하였다.<sup>28)</sup> 이 案은 「1973 年 기름 以外의 物質에 의한 汚染의 경우에 있어서 公海上의 措置에 關한 議定書」에 의하여 改正된 기름에 의한 汚染을 隨伴하는 事故의 案에 있어서 公海上의 措置에 관한 國際協約을 改正하는 選擇的 議定書」(Optional Protocol Amend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relating to Intervention of the High Seas in cases of Oil Pollution Casualties as Amended by the Protocol relating to Intervention on the High Seas in cases of Pollution by Substances other than Oil 1973)의 是 간 題目으로 提案하였다.

<sup>28)</sup> IMO LEG 53/3/3.

이 案의 性質은 西獨이 法律委員會 第 44 會期에서 提案하였던 內容과 비슷하나 그 內容中 다음 2가지가 다르다. 즉 이 案은 그 題目에서 가리키는 바와 같이 Intervention 1969뿐만 아니라 Intervention PROT를 基礎로 하여서 追加 議定書의 形式으로 하고 있다.<sup>29)</sup> 그리고 報告制度에 關하여서는 法律委員會 第 52 會期에 提案하였든 報告義務規定을 撤回하고, 海洋環境 保護委員會가 MARPOL에 關聯한 報告節次를 다루기로 하였다.<sup>30)</sup>

이 選擇的 議定書의 새로운 提案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第 5 條 第 1 項에 다음 內容을 追加한다.

① 만일 極히 緊急한 경우 (in case of extreme urgency) 에는 沿岸國은 救助船으로 하여금 措置를 取하게 指示할 수 있다. 救助船은 委意的으로 港內 난바다 터어미널, 內水 領海 以內에 있거나 혹은 領海

支給한 特別 報償을 海難船舶의 所有者에게 請求할 權利가 있다.

프랑스가 提案한 위 内容은 基本的으로 第 40 會期에서 提示한 内容과 같다. 그러나 이 案에서는 Intervention 1969 에서 規定한 엄격한 介入要件을 包含하고 있지 않으며, 介入措置를 取하기 前에 遭難船으로 하여금 旗國의 管轄廳 및 救助者에 대하여 通知하도록 하는 通知義務規定을 包含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強制的 救助活動을 行해야 할 救助船의 範圍를 擴大하고 海難船舶과 전히 關係가 없는 救助船에 도 미친다는 것이 새로운 點이다.

### (3) 西獨의 改正 意見書

西獨은 法律委員會 第 53 會期에서 「1969 年 公海上 介入協約」에 관한 選擇的 議定書 草案」(Draft Optional Protocol to the 1969 Intervention Convention)을 새로이 提案하였다.<sup>28)</sup> 이 案은 「1973 年 기름 以外의 物質에 의한 汚染의 경우에 있어서 公海上의 措置에 關한 議定書에 의하여 改正된 기름에 의한 汚染을 隨伴하는 事故의 案에 있어서 公海上의 措置에 관한 國際協約을 改正하는 選擇的 議定書」(Optional Protocol Amend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relating to Intervention of the High Seas in cases of Oil Pollution Casualties as Amended by the Protocol relating to Intervention on the High Seas in cases of Pollution by Substances other than Oil 1973)라는 간 領題으로 提案하였다.

<sup>28)</sup> IMO LEG 53/3/3.

이 案의 性質은 西獨이 法律委員會 第 44 會期에서 提案하였던 內容과 비슷하나 그 內容中 다음 2가지가 다르다. 즉 이 案은 그 題目에서 가리키는 바와 같이 Intervention 1969뿐만 아니라 Intervention PROT를 基礎로 하여서 追加 議定書의 形式으로 하고 있다.<sup>29)</sup> 그리고 報告制度에 관하여서는 法律委員會 第 52 會期에 提案하였든 報告 義務規定을 撤回하고, 海洋環境 保護委員會가 MARPOL에 關聯한 報告節次를 다루기로 하였다.<sup>30)</sup>

이 選擇的 議定書의 新로운 提案 內容은 다음과 같다.

#### 1. 第 5 條 第 1 項에 다음 內容을 追加한다.

① 만일 極히 緊急한 경우 (in case of extreme urgency) 에는 沿岸國은 救助船으로 하여금 措置를 取하게 指示할 수 있다. 救助船은 姿意的으로 港內 난바다 터어미널, 內水 領海 以內에 있거나 혹은 領海 以遠에서 海難船舶을 향하여 航進中인 것을 말한다.

#### ② 第 6 條에 다음 事項을 追加한다.

① 沿岸國의 指示에 따른 救助船이 損害를 입은 경우에는 沿岸國은 報償責任이 있다.

② 救助者는 救助船이 支出한 救助費用에 대하여 沿岸國에 報償請求權을 가진다.

③ 救助者와 海難船舶 사이의 契約合意를 侵害함이 없이 沿岸國의

---

註29) IMO. LEG 53/3/3. Annex 1.

30) IMO. LEG 53/3/3. 7

指示에 따른 救助活動은 沿岸國의 法律에 의하여 實行한 것으로 看做  
就是，沿岸國의 法律에 의한 法的救濟措置를 要求할 수 있다.

3. 第8條 第1項에 나온 사항을 정리하다

第五條 第十項 ②에 따른 조세의 부과와 면제는 發生의 紛爭에 있어 그

（1964年1月1日 橋上 美里詩作）

圖 1-1-1-1 藝術家行動的三項原則 (The three protocols of an artist) (摘自《藝術行動》)

2012 MAC 3 E6 53-12-13 Appendix II

西漢政府는 80년대 초반에 樞府를 略顯연에 떠 하여 略顯부를 확장하였다. 略顯부는 1984년 2월 5일 호남지방으로서 정부청사를 서지 전부로 확장되었고 있다. (IMO LEG 53-3<3-5>)

"the rights of a coastal state to intervene on the High Seas to protect areas its jurisdiction is recognized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文言은 Intervention 1969의 締約國이 議定書의 受諾여부를 任意的으로 決定할 수 있다는 것을 強調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沿岸國의 介入權은 選擇議定書의 加入國에 船籍을 둔 船舶에만 적용하는 것이다.

#### (4) 公法規制의 問題點

沿岸國의 積極的인 介入權에 關하여 國際法은 理論上으로는 慣習法의 인 自衛權의 行使라고 主張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沿岸國이 直接 所有하고 있는 公船으로서의 救助船에 대하여서만 救助活動을 命令할 수 있다. 그러나 自國民이 所有하고 있는 民間救助船에 대한 救助活動의 指示는 이 船舶의 徵發的 措置로서 政府의 非常措置에 該當한다고 본다. 따라서 沿岸國이 民間救助船에게 強制的 徵發的 救助活動의 命令에 관하여 報償制度를 立法하였다고 하더라도 救助活動의 命令에 관하여 報償制度를 立法하였다고 하더라도 救助契約이 契約自由의 原則에 立腳하여 發展하여온 海事契約이기 때문에 社會的妥當性과 私有財產의 保護原則이 크게 侵害된다고 본다.

또한 沿岸國의 船籍을 가지지 아니한 外國籍 救助船에게 그 船舶의意思에 反하여 危險한 救助活動을 強制하는 것은 現行 國際法의 基本原則을 벗어나는 行爲이고, 만일 外國籍 救助船이 實際上 不應할 경우 沿岸國이 이 船舶에 대한 不利益 措置는 도리어 國際的 紛爭이 原因이 되기 때문에 實際上 實效性이 없는 것이다.

救助活動을 擔當하고 있는 國際救助聯盟은 여러나라가 이웃하고 있는 海域에서 救助活動을 할 경우에는 나라마다 自國 中心의相反되는 救

救助指示를 調整하기 등한되는 理由로 沿岸국의 強制的 救助에 反하여 反對意思을 提示하고 있다. 또한 海難船舶의 所有者側의 聯衆海運會議所 (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 ICS)에서 蔓延 海難救助에 對한 無端의 驚悚的 救助船熱과 任意的 救助船舶을 具體的으로 別けて 有する 救助費에 對한 強制的 救助에 대하여 譴責을 提起하고 있다.



上記은 海難發生에 関한 云法規定의 新證性 在解서는 會議 律案提出에 關한 計劃이 有する 海難救助制度가 基本的 要約關係에서 以循而 有する 云法規定의 有無에 關한 一概的 誓言을 有하는 現狀이다.

註32) 英國, 美國, 리베리아, 홍콩, 네덜란드, 東獨

33) 편웨드, 그리이스, 소련

34) 프랑스, 西獨, 인디아, 스페인

包시킬 수 없다는 主張이支配的이다.

그 배경에는 公法規定을 包含하는 새로운 海難救助協約은 各國의 國內 國際關係로 早期 批准이 困難하고 또한 法理論上 公法과 私法의 分離概念이<sup>35)</sup> 깔려 있다.

沿岸國 介入權에 관한 公法規定은 國際海事機構 法律委員會 第53會期에서 다음과 같이 整理하여 結論을 맺었다.

- ① 海難救助에 關하여 새로운 協約속에 公法規定을 包含하자는 의견이 支持를 받지 못하고 있다.
- ② 強制救助의 意見에 대해서도 지지가 거의 없다.
- ③ 事故報告는 國際海事機構의 海洋環境 保護委員會의 作業에 法律委員會의 要請을 반영한다.<sup>36)</sup>

그리고 Intervention 1969의 改正의 必要性에 대해서는 이 協約을 根據로 實際로 介入權을 行使하였던 實例를 調査하여 法律委員會의 다음 會期까지 文書로 提出할 것을 合意하였다.

#### 7. 國際海事機構 法律委員會 第54會期<sup>37)</sup>

國際海事機構 法律委員會는 西獨이 主張한 強制救助(mandatory salvage)의 公法的 側面(Public law Aspects of Salvage Operations)에서

註35) 公法 私法의 分離를 反對하는 國家도 있다. 例) 인디아, 스페인

36) IMO. LEG 53/wp

37) IMO. LEG 54/4/5. 27 Februray 1985.

### Intervention 1969改正의 選擇的 議定書의 主張과<sup>38)</sup> 또另<sup>39)</sup> CMI草案

1條에서 3條 그리고 強制救助의 問題와 關聯한 主張을<sup>40)</sup> 받아들여

西獨의 提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意見을 提示했다.<sup>41)</sup>

(1) 國際海事機構에서는 海難救助에 관한 公法의 側面을 特히 海洋

環境의 關聯으로 ② 利害關係가 있다로 보는 바.

③ 船舶救助는 一體의 事業이 承認되는 時候에 依하여 行為하는

事由로 本來의 事業으로 依託하는 救助는 本來의 事業으로 依託하는

④ 大部分은 代表船主의 救助로 本來의 海難救助協約에 依託하는 바.

因此 해양의 ④ 關聯의 Intervention 1969의 改正에 依託하는 바.

그리고

⑤ 本來의 關聯은 本來의 關聯은 Intervention 1969의 ④

該點의 關聯은 本來의 關聯은 本來의 關聯은 Intervention 1969의 ④

該點의 關聯은 本來의 關聯은 本來의 關聯은 Intervention 1969의 ④

該點의 關聯은 本來의 關聯은 本來의 關聯은 Intervention 1969의 ④

該點의 關聯은 本來의 關聯은 本來의 關聯은 Intervention 1969의 ④

該點의 關聯은 本來의 關聯은 本來의 關聯은 Intervention 1969의 ④

該點의 關聯은 本來의 關聯은 本來의 關聯은 Intervention 1969의 ④

註38) IMO. LEG 53/3/3

39) IMO. LEG 53/3/2

40) IMO. LEG 54/4/5 pp.1 - 7 參照

## 第4章 結論

公海에서 發生한 汚染事故는 가까운 沿岸國에로의 被害가 擴大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國家의 管轄權에도 속하지 않는 公海上의 汚染規制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가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종래의 傳統的인 國際法上의 原利인 公海自由의 原則에 의하면 公海上에서 船舶에 대한 관할권은 그 船舶의 旗國에 있으므로 그 밖에 어떠한 國家도 公海上에서 他國의 船舶에 대하여 어떠한 權力行爲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Torrey Canyon號 事故와 같은 大型油槽船의 海難事故로 인하여 沿岸國의 介入이라는 문제가 발단되었다.

Intervention 1969에서는 沿岸國은 公海上의 海難 기타 汚染 또 한 중대하고 급박한 危險을 防止, 輕減 또는 除去하기 為하여 필요한 경우에 介入權을 行使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第16條 1項)

그러나 Intervention 1969는 ①회복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海上污染事故인 根本的인 防止를 위한 事前對策이 없다는 點 ② 介入할 수 있는 要件과 範圍등에 대한 規定이 抽象的인 用語로 되어있고 해석기준이 없어서 沿岸國이 과정으로 介入할 수 있다는 點 ③海洋污染의 大型化 추세에 비추어 볼 때 經濟性, 技術性이 不足한 국가에서 汚染防止措置의 實行上의 어려움이 있다는 點 ④遠距離에서 發生한 汚染事故에 대해 沿岸國의 介入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點, 등의 問題點이 있다. 이러한 問題點들에 대해서는 ①海技上의 教育 및 자격강화와 선체구조의 개선등을 통한 예방조치의 기능강화와 지역단위의 국제기구신설 ②원

거리 공해상의 汚染事故에 대한 인접국가의 협력 등의 對策이 필요하다.

그리고 第 3 章에서 考察해 본 바와 같이 沿岸國의 介入權에 대하여 各國家의 의견은 첫째, 海難救助의 私法的問題와 더불어 介入權問題는 계속 檢討하여야 한다는 견해, 둘째, 沿岸國의 介入에 대한 公法規定 또는 國際協約을 새로이 제정해야 한다는 견해, 세째, Intervention 1969는 개선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로 크게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이중에서 첫번째 견해는 現在 發效中에 있는 海洋污染關係協約과 중복되거나 구조선박에 대한 지휘권행사 혹은 구조중에 發生한 손해처리 및 구조료 정산에 관하여 각국의 法律體制의 산정방식 및 경제적, 사회적 차이 때문에 국제협약만으로는 實効를 거두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고, 두번째의 견해는 國際海事機構 會議 참석국의 대부분이 反對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條約의 탄생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겠다. 沿岸國의 介入權 문제는 沿岸國과 旗國의 利害關係의 조절이라는 점에 기준을 두고 있다는 點을 고려하여 볼 때 현재 發效中인 Intervention 1969를 原則으로 하고 미비한 點들을 各國家間의 지역협정을 통하여 해결 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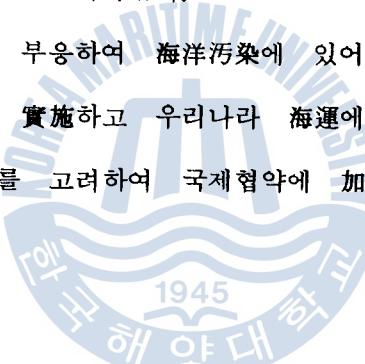
끝으로 우리나라의 實情을 살펴보면 原油輸入이 急增하고 있어서 海難事故가 發生한 여지가 많으며, 특히 해난사고의 결과 생기는 海洋污染에 대한 防止는 국내법제의 정비만으로는 完全하지 못하다. 따라서 우리의 독자적인 國內法制 외에 地域協定 (Regional Approach)이 效果的일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은 海洋의 제반문제에 있어서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직접 對立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양오염에 대해 有效한 방지 및 제거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안제국에 의한 주변 공해상의 오염 방지에 관한 法的規制와 함께 汚染의 沿海에의 확대를 규제하기 위한 地域協力에 관한 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며 나아가서 세계협력체계의 法的인 기반을 形成하여야 하겠다.

또한 확립된 國際的인 先例에 입각한 공동입법화(또는 條約化)는 海洋의 利用的 側面뿐만 아니라 海難으로부터의 防止에 있어서도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課題에 부응하여 海洋污染에 있어 우리나라는 地理的 條件에 따라 規制對策을 實施하고 우리나라 海運에 미치는 反轉效果(Boom-erang Effect)를 고려하여 국제협약에 加入하여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東洋書〕

#### 1. 單行本

- 郭潤尚, 債權各論, 서울: 博英社, 1984.
- 具善均, 環境保全法, 서울: 三英社, 1981.
- 金昌植, 海商法, 서울: 韓吉出版社, 1987.
- 金明基, 國際法, 서울: 華學社, 1984.
- 金利相, 国際流出本의 해양汚染에對策並處理, 韓國検査定公社  
1982.
- 金相鍾, 國際條約集, 서울: 博英社, 1981.
- 尹錦中心, 國際法, 慶南大學校·嶺東問題研究所, 1982.
- 金善日, IMO海事安全管理·海運港灣概要, 1983.
- 金燦石, 國際機構論, 서울: 博英社, 1967.
- 慶星奎, 海洋污染에關한 國際権利, 早稻: 韓國海洋大學·海事圖書出版社  
部, 1975.
- 朴容遠, 해상교통법, 韓情全株式會社, 早稻: 1986. 9.
- 朴善榮, 海洋國際法, 서울: 檢國大學校出版社, 1963.
- 朴善榮, 海洋法特殊研究, 서울: 法文社, 1973.
- 朴椿浩, 柳炳華, 海洋法, 서울: 民音社, 1986.
- 柳炳華, 國際法總論, 서울: 1985.
- 李漢基, 國際法講義, 서울: 1983.

李好挺, 國際私法 서울, 經文社, 1981.

加藤一郎, 公害法の 國際的展開, 東京: 岩波書店, 1982,

～ 公害法の 研究 V ～

各島芳, 國際法における 權利濫用, 東京: 酒井書店, 1975.

高野雄一, 國際法概念(上), 東京: 有斐閣, 1970

, " (下), " , 1972

國際組織法 東京: 有斐閣, 1961.

高林秀雄, 領海制度の 研究, 東京: 有信堂, 1979.

高梨正夫, 新海洋法概念 東京: 成山堂, 1985.

龜井利明, 海上公害論, 大阪 關西大學 經濟政治研究所, 1974.

木畑公一, マルシシップと 便宜置籍船, 1977.

小田 滌, 海洋法研究, 東京: 有斐閣, 1975.

, 海の 資源と國際法 I 東京: 有斐閣, 1977.

小川芳彦, 波多野里望, 國際法講義, 有斐閣, 1982.

## 2 . 論文

姜沫勳, 軍艦의 法的地位(博士學位論文), 연경문화사, 1984.

權相河, 海洋汚染防止法 改正의 基本方向 - MARPOL 協約介入을 契機로 -, 韓國海法會誌 第8卷, 1986. 8.

, 海洋汚染防止法의 改正方向 - 外國의 立法例를 中心으로 -  
海運產業研究, 1985. 5.

金東勳, 海難救助에 關한 新條約案과 1980年 로이드 海難救助 標準契約書의 關聯性, 韓國海運學會誌 第2號, 1985. 10.

- 金明圭, 海洋法의 變遷過程에 關한 研究 大韓國際法學會論叢, 1978.12
- 金明基, 海洋法協約과 大韓民國의 海上安保, 廣場, 1982. 9.
- 金文達, 第3次 UN海洋法會議 第11會期(1982), 慶北大 法大論叢, 1982. 11.
- 金相旼, 海洋污染의 實態와 規制에 關한 考察, 韓國海建學會誌 第2號, 1985.
- 金榮球, 深海底 資源開發法 漢陽大博士學位論文, 1984.
- 金在昇, 海洋污染의 問題點과 防除對策 海運港灣, 1984 (가을호)
- 金鍾吉, 國際海事機構 (IMO)의 海洋環境保全에 關한 活動 海運港灣 1984. 1 (가을호)
- 金燦奎, 海洋污染과 國際條約, 大韓國際法學會論叢, No. 23-1. 1978.
- , 領海의 範圍에 關한 研究, 大韓國際法學會論叢, No. 32. 1972
- , 公海의 油類污染에 대한 法的規制 月刊考試 1974.12
- , 國際的으로 본 海洋污染防治의 實態 慶熙法學 第16卷 第1號, 1979.
- , UN海洋法協約 中 몇가지 問題點 考試界, 1983. 4.
- , 카나다의 北極水域 汚染防止法, 司法行政, 第16卷 1號, 1975
- , 유엔海洋法協約上의 海洋環境保護에 關한 規定과 國際法 整備, 海洋政策動向, 海洋研究, 1985. 3.
- , 海洋污染에 關한 中共의 態度, 考試研究, 1981. 11 (pp. 142-156)
- 南基煥, 國家權力의 領域의 效力範圍 考試研究, 1984. 8.

盧明濬, 國際法上의 環境污染問題 서울大 法學 No.22-2.

서울大 法學研究所, 1981.

, 海洋法의 新方向 - 第3次 UN海洋法會議를 中心으로 -

現代國際法論, 博英社, 1978.

閔星奎, 海洋法會議와 海洋污染規制에 대한 政策動向 韓國海洋大學

論文集 第13輯, 1978.

, 海洋污染防止와 새 海洋法秩序 立法調查月報, 1977.6.7

(合併號)

朴容燮, 1982年 UN海洋法協約과 海難防止制度(上,下) 海洋韓國

1985. 6 ~ 7.

, 船舶에 의한 海洋污染의 國際的인 規制措置 海洋大論文集,

第12輯, 1977.

朴相沃, 1973.78 海洋污染防止協約의 國內發效와 그 對策 海洋韓國

1984.11.

朴鍾聲, 第3次海洋法會議 檀國大學論文集, No.17. 1983.

, 未來의 海洋法 大韓國際法學會論叢, 第18卷 第1號, 1973.6

朴椿浩, 1982年 UN海洋法協約 考試界, 1985.11.

裴炳泰, 1969年 油濁民事責任條約(CLC. 1969)과 1971年 油濁補償

國際基金條約의 概要와 그 改正動向, 韓國海法會誌 第5卷

1983. 8.

申鉉德, 海洋污染防止에 관한 國際條約과 國內法 國際法學會論叢,

1982.

柳炳華, 第 3 次 UN 海洋法會議의 成果分析(上, 下) 考試研究, No.94

-95, 1982.

, 海洋公害의 國際規制, 고려대 학교 法學研究所, 法學論集, 第 21

輯, 1983, 12.

, 國際法上 不法行爲責任과 危險과 結果責任, 考試界, 1983, 4

李光雨, 우리나라 海洋環境保全研究의 現況과 展望 海洋政策動向,

1983, 12.

李光雨, 新海洋國際法秩序에 관한 研究 法政論叢, No.5 國民大法學研

究所, 1982.

이상도, 國際法上 海洋汚染防止에 관한 小考, 釜山大碩士學位論文, 1983, 2

李相浩, 海底石油開發裝備의 法的地位, 韓國海法會誌 第 5 卷, 1983, 2

, 船舶의 航用에서 發生する 海洋油類污濁의 國際的規制 韓國

海法會誌 第 7 卷, 1985, 10, 1945

海洋環境免責條款 - 海洋汙染의 現況과 問題點 - 中央大論文集

第 28 輯, 1984.

李淳福, 國際海洋環境法에 관한 研究, 1984, 12 東亞大學校

(博士學位論文)

李革暉, 海洋汚染과 沿岸國의 管轄權, 大韓國際法學會論叢, 1980, 12

, 國有海洋法秩序와 海洋汙染에 관한 考察, 廣熙大論文集 第 9

輯, 1979.

李長薰, 海洋汙染防止法에 관한 小考, 海洋韓國, 1984, 7.

李鍾赫, 國際法上 海洋污染防治에 관한 研究, 慶北大 碩士學位論文  
1983. 12.

李俊秀, 船舶衝突事件에 관한 裁判管轄權 新興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59.

, 國際船員法研究, 檀國大博士學位論文.

, 海水污濁에 대한 規制 - 管轄權을 中心으로 -, 韓國海洋大學  
論文集, 1980. 3.

, 便宜置籍船에 관한 研究, 韓國海洋大學 海運研究所 1983. 4

崔在洙, 海洋과 人類의 未來, 港灣, 韓國港灣協會, 1986. 3. Vol.10.

崔載勳, 海洋污染防治에 관한 旗國主義의 修正, 大韓國際法學會論叢,  
1978. 12.

河在煥, 環境污染規制에 관한 國際法的研究, 韓國海洋大學 海運研究所  
論文集, 1984. 4.

, 國際海洋法會議와 沿岸國의 漁業規制에 관한 研究, 韓國海洋  
大學 海運研究所 論文集 第1輯, 1982. 4

咸秉春, 海洋法에 관한 韓國의 立場 (A Korean Perspective on the  
Law of the Sea), 法律研究 第2輯 延世大 法科大學 法律  
問題 研究所, 1982. 6

許亨澤, 黃·東支那海에서의 地域協力, 海洋政策動向 第18號, 海運研  
究所, 1985. 3

洪性化, 海洋法會議의 經過와 海洋法協約, 廣場, 1982. 9.

龜井利明, 海上油濁事故에 관한 船主의 責任 海洋韓國, 1975. 6

鈴木昭洋, 海洋汚染の 處罰權限 海運, 1975. 9.

敏蔭正一, 國際的 環境保護と國際法 ジリスト (No.681), 1979.1.

西村康雄, 新しい段階に入った海洋汚染防止法制, ジリスト (No.795),  
1983. 7.



[西洋書]

1. 單行本

Allen L. Springer, *The International Law of Pollution*,  
Quorum Books, 1983.

Brierly, *The Law of Nations*, Sixth edition, Oxford Uni-  
versity Press, 1963.

D.W. Abecassis, *Oil Pollution from Ship*, London, Butter-  
worths, 1978.

H.A. Smith, *The Law and Custom of the Sea*, third edition,  
London Stevens & Sons Limited, 1959.

H. Lauterpacht, *International Law Vol.1*, 3rd ed. 1958 by  
Oppenheim, Longmans, Greer and Co.

I.A. Shearer, D.P.O' Connell.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Vol.I,II, Clarendon Press, Oxford, 1984.

Nagendra Singl, *British Shipping Laws & International Con-  
ventions of Merchant Shipping*, London Stevens & Sons,  
1963.

Samir Mankabad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sation*,  
Croom Helm London & Sydney, 1984.

Timageenis, Gr.J, *International Control of Maritime Pollution*,  
Vol.1,2, New York; Oceana Publications, Inc., 1980.

## 2. 論 文

Anthony R. Miller, *Lloyd's Standard Form of Salvage Agreement - "LOF 1980"; A Commentary, Journal Maritime &*

*Commerce, Vol.12, No.2, January, 1981.*

Bernard. H. Oxman,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The Tenth Session (1981),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Vol.76, 1982.*

Rurdick H. Brittin, *International Law for Seagoing Officers, fourth editions, Naval Institution Press, 1981.*

David Abecassis, *IMO and liability for oil pollution from ship ; a retrospective,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1983. 1.*

Dean E. Cycon, *Calming Troubled Waters; The Developing International Regime to Control Operational Pollution,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13, No.1, October, 1980.*

Geoffrey Brice, Q.C, *Salvage ; Present and Future,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August, 1984.*

G.W. Haight, *Law of the Sea Conference - Why Paralysis?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8, No.3.*

K. Ramakrishnan, *Environmental Concerns and the New Law of the Sea,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16, No.1,*

January, 1985.

L.D.Guruswany, Environmental Law,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1983. 4.

Peter Coulthard, A New Cure for Salvors -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OF 1980 and the C.M.I Dratt Salvage  
Convention,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  
14, No.1, January, 1983.

Philip A. Cummins, Dennis E. Logue, Robert D. Tollision and  
Thomas D. Willett, Oil Tanker Pollution Control ;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7, No.1, October, 1975.

Robert A. Shinn,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Maritime Pollution Control, Praeger Publishers, 1974.

S.T. Harley, The Sea Law Changeth,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February, 1983.

Ted L. McDorman, The 1982 Law of the Sea Convention ; The first year,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15, No.2, April, 1984.

Wilherm H. Lampe, The New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nd Its Place in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Maritime Law, Journal Maritime & Commerce Vol.14, No.3, July, 1983.

William Kenneth Bissell, Internation on the High Seas An American Approach Employing Community Standards,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7, No.4, July, 1976.

Z. Brodecki, New definition of pollution damage,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ly, August, 1985.

[其 他]

環境總, 海洋污染防治法規, 1981.6.

外務部, 執務資料 82-189,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12.

IMO, LEG 52/411

IMO, Document LEG XL/2/1 6, March, 1979.

IMO, " LEG XLLV/6,17, October, 1980.

IMO, LEG XLIV/61, 10, November, 1980.

IMO, LEG 52/4, Annex 1 "Draft Convention on Salvage approved by the XXII conference of the CMI, Montreal, 25-29 May, 1981.

IMO, MSC XXXVIII/21/Add.1, pp.10-11,

William Kenneth Bissell, Internation on the High Seas An American Approach Employing Community Standards,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7, No.4, July, 1976.

Z. Brodecki, New definition of pollution damage,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ly, August, 1985.

[其 他]

環境總，海洋污染防止法規，1981.6.

外務部，執務資料 82-189,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12.

IMO, LEG 52/411

IMO, Document LEG XL/2/1 6, March, 1979.

IMO, " LEG XLLV/6, 17, October, 1980.

IMO, LEG XLIV/61, 10, November, 1980.

IMO, LEG 52/4, Annex 1 "Draft Convention on Salvage approved by the XXII conference of the CMI, Montreal, 25-29 May, 1981.

IMO, MSC XXXVIII/21/Add.1, pp.10-11,

IMO, LEG XXXVIII/2 Annex IV

IMO, Document LEG XL/2/1, 6, March, 1979.

IMO, LEG 53/2, 12, November, 1984.

IMO, LEG 53/3/2/Corr/ 5, December, 1984.

IMO, LEG 53/3/2/, 12, November, 1984.

IMO, LEG 53/3/1,

IMO, LEG 53/3/3, Annex I, Annex II.

IMO, LEG 53/WP,

IMO, LEG 54/4/5, 54/4

IMO, Coastal State Protection Against Major Maritime

Disasters, 15, September, 1978.

IMO, 1982, Reports and Studies No.17, The Evaluation of  
the Hazards of Harmful Substances Carried by Ships.

IOC / INF - 407. rev. Paris, 1, January 1980, Regional  
Cooperation in Marime Sciences.

Maritime Safety Agency, Annual Report on Maritime Safety,  
December, 1984.

UNEP/WG. 63/4, 29, January, 1982, Report of the Meeting  
of Government Experts on Rigional Maritime Programmes,